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관련 고시·공고

2016. 9. 26.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관련 고시·공고

2016. 9. 26.



## - 목 차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1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고시·공고

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67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	73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77
④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	89
⑤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기관 지정 .....	97
⑥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	101
⑦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107
⑧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111
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121
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	131
⑪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	141
⑫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	145
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	149
⑭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	153
⑮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	167
⑯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173
⑰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	177
⑱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	185
⑲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189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시행 2016.3.23.] [법률 제13583호, 2015.12.22., 일부 개정]</p> <p>제 정 1987.12. 4. 법률 제3984호            타법개정 1992.11.25. 법률 제4501호            타법개정 1993. 3. 6. 법률 제4541호            전부개정 1995.12. 6. 법률 제4997호            일부개정 1997. 8.28. 법률 제5382호            일부개정 1998.12.30. 법률 제5604호            전부개정 2000. 1.21. 법률 제6198호            타법개정 2001. 5.24. 법률 제6472호            타법개정 2002. 1.26. 법률 제6627호            일부개정 2003. 7.25. 법률 제6937호            타법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2005.12.30. 법률 제7816호            타법개정 2007. 4.11. 법률 제8361호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74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2009. 1.30. 법률 제9401호            일부개정 2009. 3.18. 법률 제9501호            타법개정 2009. 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2009. 5.22. 법률 제9708호            일부개정 2009.12.30. 법률 제9883호            타법개정 2010. 2. 4. 법률 제10012호            타법개정 2010. 3.31. 법률 제10220호            타법개정 2011. 3. 9. 법률 제10445호            일부개정 2012. 5.23. 법률 제11436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3.12.30. 법률 제12120호            타법개정 2014. 5.20. 법률 제12591호            타법개정 2014. 5.28. 법률 제12687호            일부개정 2014. 6. 3. 법률 제12722호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72호            일부개정 2015. 6.22. 법률 제13342호            일부개정 2015.12.22. 법률 제13583호</p>	<p>[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767호, 2015.12.30., 일부 개정]</p> <p>제 정 1988.10.20. 대통령령 제12538호            타법개정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1993. 5.26. 대통령령 제13889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전부개정 1996. 6. 7. 대통령령 제15020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2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49호            전부개정 2000. 8. 5. 대통령령 제16943호            일부개정 2004. 2.25. 대통령령 제18293호            타법개정 2004.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타법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개정 2006.10.12. 대통령령 제19701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일부개정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5호            타법개정 2009. 8.18. 대통령령 제21692호            일부개정 2010.10.27. 대통령령 제22463호            일부개정 2012.11.12. 대통령령 제24174호            타법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67호</p>	<p>[시행 2016.1.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9호, 2015.12.31., 일부개정]</p> <p>제 정 2000. 8.19.            일부개정 2008. 9. 3.            일부개정 2012.11.23.            타법개정 2013. 3.24.            타법개정 2014. 5.27.            일부개정 2015.12.28.            일부개정 2015.12.31.</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4.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li> <li>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li> <li>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말한다.</li> <li>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li> <li>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li> <li>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li> <li>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li> </ol>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6.10.12.&gt;</p> <p><b>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b>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li> <li>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li> <li>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11.12.]</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p> <p>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p> <p>9. "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를 말한다.</p> <p>10.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p> <p>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4.6.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li> <li>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li> <li>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li> <li>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li> <li>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li> <li>6.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7.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li> <li>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b></p> <p><b>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p><b>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10.12., 2008.2.29., 2008.8.7., 2013.3.23.&gt;</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b>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b>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p>	<p><b>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b>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lt;개정 2008.9.3.&gt;</p> <p>② 삭제 &lt;2008.9.3.&gt;</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lt;개정 2013.3.23.&gt;</p> <p>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6.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li>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li> </ol>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3.3.23., 2014.6.3.&gt;</p> <p>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4.6.3.&gt;</p> <p>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4.6.3.&gt;</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구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②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6.10.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li> <li>2. 총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li> <li>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li> <li>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li> </ol>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④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b>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b>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06.10.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li> <li>2. 소프트웨어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li> <li>3. 교통·통신·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li> </ol>	<p><b>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b>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9.3., 2013.3.24.&gt;</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4.6.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li> <li>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전문개정 2012.5.23.]</p> <p><b>제8조(소프트웨어사업 창업의 활성화)</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12.5.23.]</p>	<p>있을 것</p> <p>③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b>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b>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li> <li>2.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li> <li>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li> </ol> <p><b>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b>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08.2.29., 2010.10.27.,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사업자</li> <li>2.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b>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lt;개정 2014.5.28.&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p>	<p><b>제8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0.27., 2013.3.23.&gt;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신설 2010.10.27.&gt;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2009.8.18., 2010.10.27., 2013.3.23.&gt;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p>	<p><b>제3조의2(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b>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4.&gt; 1. 정관 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시설·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별표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4.&gt;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영 제17조의7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b>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12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13조(품질인증)</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12., 2013.3.23.&gt;</p> <p>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lt;개정 2012.11.12., 2015.12.30.&gt;</p> <p>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12., 2013.3.23.&gt;</p> <p>⑦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10.27., 2013.3.23.&gt; [전문개정 2008.8.7.]</p> <p><b>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b>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전문개정 2012.11.23.]</p> <p><b>제3조의3(품질인증 등급)</b>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5.12.28.]</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li> <li>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li> </ol> <p>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p> <p>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p> <p>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12., 2013.3.23.&gt;</p> <p>③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08.8.7.]</p> <p><b>제9조의2(품질인증기준)</b>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li> <li>2. 소프트웨어의 신뢰성·효율성·사용과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08.8.7.]</p>	<p>[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lt;2015.12.28.&gt;]</p> <p><b>제3조의4(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b>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2.11.23.&gt;</li> <li>2. 조직·시험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1부</li> <li>3.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ol>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1.23., 2013.3.24., 2015.12.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li> <li>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및 품질인증 등급</li> <li>3. 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li> </ol>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p>	<p><b>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b> ①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8.8.7., 2013.3.23.&gt;</p> <p>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lt;개정 2008.8.7.&gt;</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08.8.7., 2013.3.23.&gt;</p> <p>④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b>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b>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 우수 소프</p>	<p>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1.23., 2013.3.24., 2015.12.28.&gt;</p> <p>[본조신설 2008.9.3.]</p> <p>[제3조의3에서 이동 &lt;2015.12.28.&gt;]</p> <p><b>제4조(품질인증의 신청)</b>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9.3., 2015.12.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설명서</li> <li>2. 사용자취급설명서</li> <li>3.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li> </ol> <p><b>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b>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소프트웨어가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9.3.&gt;</p>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6조(인증마크)</b>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와 같다. &lt;개정 2008.9.3.&gt;</p> <p><b>제6조의2(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b>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요건에</li> </ol>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li> <li>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li> </ol> <p>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6.22.]</p>	<p>트웨어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5.12.30.]</p> <p>[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lt;2015.12.30.&gt;]</p> <p><b>제10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절차 등)</b>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지정시험기관은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이미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평가시험을 받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p>	<p>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정관</li> <li>3. 별표 2의3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li> </ol>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에 대한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li> <li>2.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li> <li>3.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li> </ol> <p>[본조신설 2015.12.31.]</p> <p><b>제6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등)</b>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설명서</li> <li>2. 평가시험 참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li> </ol> <p>[본조신설 2015.12.31.]</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1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b>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 수준, 연구 동향, 시장 동향, 사업자 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p>	<p>[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6으로 이동 &lt;2015.12.30.&gt;]</p> <p><b>제10조의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등)</b> ① 법 제1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0.]</p> <p><b>제10조의5(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b></p> <p>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li> <li>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li> <li>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li> <li>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08.8.7.] [제10조의2에서 이동 &lt;2015.12.30.&gt;]</p> <p><b>제10조의6(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요청사유</li> <li>2. 제출기한</li> <li>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li> <li>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li> <li>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li> </ol> <p>[본조신설 2008.8.7.] [제10조의3에서 이동 &lt;2015.12.30.&gt;]</p> <p><b>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b>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lt;개정 2008.8.7., 2009.8.18.,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li> <li>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li> <li>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li> </ol>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08.8.7., 2013.3.23.&gt;</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제목개정 2008.8.7.]</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b>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4.6.3.&gt;</p> <p>③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6.3.&gt;</p> <p>④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4.6.3.&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b>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p>	<p><b>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b> ① 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lt;개정 2008.2.29., 2008.8.7.,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관련 시장·기술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li> <li>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이 위탁한 사업</li> </ol> <p>② 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8.7.&gt; [제목개정 2008.8.7.]</p> <p><b>제12조의2(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등)</b>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및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및 제품 정보의 수집·분석</li> <li>2.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li> <li>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li> <li>4.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li> <li>5. 그 밖에 정품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전문개정 2012.11.12.]</p> <p><b>제12조의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b>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10.12.]</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b>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2.]</p> <p><b>제18조(세계지원 등)</b>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p>		
<b>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b>		
<p><b>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5.6.22.&gt;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b>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5.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li> <li>2.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0일</li> </ol>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등을 활용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p>	<p>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7.]</p> <p><b>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b> ① 법 제20조제6항에서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lt;개정 2012.11.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제품명</li> <li>2. 수량 및 계약금액</li> <li>3.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li> <li>4.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의 사업명 및 총 사업규모</li> </ol>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2.11.12., 2013.3.23.&gt; [본조신설 2010.10.27.]</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p>	<p><b>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② 국가기관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b>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b>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lt;개정 2009.8.18., 2012.11.12.&gt;</p> <p>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p>	<p><b>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b>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관련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8.9.3.]</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다.</p> <p>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12.5.23.]</p>	<p>런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3. 소프트웨어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의 기술사이거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p> <p>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p> <p>③ 위원회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8.8.7.]</p> <p><b>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b> ①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p> <p>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전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개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b>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li> <li>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08.8.7.]</p> <p><b>제14조의4(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b> ① 법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받은 사업 중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2015.12.30.]</p> <p><b>제14조의5(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b> 법 제20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5.12.30.]</p>	<p><b>제7조의2(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b>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li> <li>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li> <li>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li> <li>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li> <li>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li> </ol> <p>[본조신설 2015.12.31.]</p> <p><b>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b>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p> <p><b>제20조의4(시정요구 등)</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li> <li>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li> </ol>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lt;2014.12.30.&gt;]</p>		<p>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li> <li>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12.31.]</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b>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li> <li>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li> </ol> <p>[전문개정 2012.5.23.] [제20조의4에서 이동 &lt;2014.12.30.&gt;]</p> <p><b>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b>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p>	<p><b>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요청 사유</li> <li>2. 제출기한</li> </ol>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li> <li>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li> <li>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li> <li>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li> <li>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li> </ol>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절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12.5.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li> <li>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li> <li>5. 제출 자료의 활용방법</li> </ol> <p>[본조신설 2012.11.12.]</p> <p><b>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b>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절한 대가지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는 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2.11.12.]</p> <p><b>제16조의2(소프트웨어사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분석, 제공 및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위탁한다. &lt;개정 2013.3.23.&gt;</p> <p>[본조신설 2012.11.12.]</p> <p>[총칙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lt;2012.11.12.&gt;]</p>	
<p><b>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p>	<p><b>제16조의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b>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로세스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li> <li>2. 프로세스 인증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li> </ol>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p>	<p><b>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b>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삭제 &lt;2012.11.23.&gt;</li> </ol>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li> <li>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li> </ol> <p>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12., 2013.3.23.&gt;</p> <p>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lt;2012.11.12.&gt;]</p> <p><b>제16조의4(프로세스 인증기준)</b>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li> <li>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li> <li>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li> <li>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li> <li>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p> <p>[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lt;2012.11.12.&gt;]</p> <p><b>제16조의5(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b> ① 법 제23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p>	<p>3. 별표 3의 작성 요령에 따른 기관현황 및 프로세스 인증 사업계획서</p> <p>4. 별표 4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4.&gt;</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1.23., 2013.3.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li> <li>2.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li> </ol> <p>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1.23., 2013.3.24., 2015.12.28.&gt;</p> <p>[본조신설 2008.9.3.]</p> <p><b>제10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b> ①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심사대상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23.&gt;</p> <p>②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을 부여하기 전에</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④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4에서 이동 &lt;2012.11.12.&gt;]</p> <p><b>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3인 이상의 프로세스 인증에 관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프로세스가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프로세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23.&gt;</p> <p>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1.23.&gt;</p> <p>[본조신설 2008.9.3.]</p> <p><b>제11조(프로세스 인증 표시)</b>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lt;개정 2012.11.23.&gt;</p> <p>[본조신설 2008.9.3.]</p> <p><b>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b>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신고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2.5.23.]</p> <p><b>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b> ① 정부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p>	<p><b>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b>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6.10.12., 2008.8.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지방자치단체</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li> <li>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li> <li>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p>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접수, 확인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을 할 수 있다.</p> <p>⑤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4.&gt;</p> <p>⑥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8.9.3.]</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3.12.30., 2014.6.3.&gt;</p> <p>1. 삭제 &lt;2015.12.22.&gt;</p> <p>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p> <p>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3.12.30.&gt;</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b>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p>	<p>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4.2.25.]</p> <p><b>제17조의3</b> 삭제 &lt;2012.11.12.&gt;</p> <p><b>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b>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7.]</p> <p><b>제17조의5(자료협조)</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 [본조신설 2004.2.25.]</p> <p><b>제17조의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12.11.12.] [종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lt;2012.11.12.&gt;]</p> <p><b>제17조의7(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b> 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제1</p>	<p><b>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b> ① 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소프트</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삭제 &lt;2015.6.22.&gt;</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5.6.22.&gt;</p> <p>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제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p>	<p>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13.3.23.&gt;</p> <p>[본조신설 2008.8.7.]</p> <p>[제17조의6에서 이동 &lt;2012.11.12.&gt;]</p>	<p>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의7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2.11.23.&gt;</li> <li>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li> <li>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4. 삭제 &lt;2012.11.23.&gt;</li> <li>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②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23.&gt;</p> <p>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23.&gt;</p> <p>④ 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lt;개정 2012.11.23.&gt;</p> <p>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1.23.&gt;</p> <p>[본조신설 2008.9.3.]</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⑤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p> <p><b>제25조(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b>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p>	<p><b>제17조의8(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등)</b></p> <p>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및 개선 권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감독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감독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 관리·감독</li> <li>2.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분석</li> <li>3.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개선권고 업무의 지원 및 그 결과의 접수·처리 업무의 지원</li> </ol> <p>[본조신설 2012.11.12.]</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li> <li>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건의</li> <li>3. 소프트웨어 기술·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li> <li>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li> <li>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li> </ol> <p>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b></p> <p><b>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b>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lt;개정 2013.3.23.&gt;</p> <p>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p>	<p><b>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b>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p> <p>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19조(정관기제사항)</b>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기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사무소의 소재지</li> <li>4. 사업에 관한 사항</li> <li>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li> <li>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li> <li>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li> <li>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li> <li>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li> <li>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li> <li>11.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li> <li>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li> <li>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li> <li>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li> <li>15. 공고에 관한 사항</li> <li>16. 대리인에 관한 사항</li> <li>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ol> <p><b>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b>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사업</li> <li>4. 사무소의 소재지</li> <li>5. 설립인가 연월일</li> <li>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li> <li>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li> <li>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li> <li>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li> </ol>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28조(공제조합의 사업)</b>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li> <li>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li> <li>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li> <li>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전문개정 2012.5.23.]</p> <p><b>제29조(기본재산의 조성)</b>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li> <li>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대리인에 관한 사항</li> <li>11. 공고의 방법</li> </ol> <p>②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p> <p><b>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b> ① 법 제2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12.11.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li> <li>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li> <li>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li> <li>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li> <li>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li> <li>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li> </ol> <p>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8조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li> <li>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li> </ol> <p><b>제22조(기본재산의 조성)</b>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li> <li>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li> <li>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li> </ol>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30조(공제규정)</b> ① 공제조합은 제28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 대상, 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p>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3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b>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공제 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31조의2(공제조합의 책임)</b>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23조(공제규정의 승인)</b>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li> <li>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li> <li>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li> <li>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 </ol> <p><b>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b>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적립·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p> <p>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제32조(지분의 양도 등)</b>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p> <p>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lt;개정 2014.5.20.&gt;</p> <p>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⑤ 민사집행 절차나 국제 등의 채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b>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li> <li>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li> </ol>	<p><b>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b>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p> <p>②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p> <p>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p> <p><b>제2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b>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p> <p>② 공제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득을 요구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p> <p>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p> <p>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14.12.30.&gt;</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34조(대리인의 선임)</b>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b>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lt;개정 2014.12.30.&gt;</p> <p>1. 이월손실금의 보전</p> <p>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p> <p>3. 이익준비금의 적립</p> <p>4. 사업준비금의 적립</p> <p>5. 이익금의 배당</p> <p>② 공제조합이 계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p> <p>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lt;신설 2014.12.30.&gt;</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36조(배상책임 등)</b>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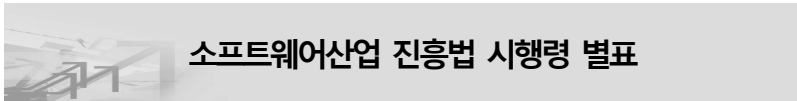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5.23.]</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보칙</b></p> <p><b>제37조(청문)</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li> <li>2. 제13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li> <li>3.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취소</li> <li>4. 제23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li> <li>5.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li> </ol> <p>[본조신설 2015.12.22.] [중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lt;2015.12.22.&gt;]</p> <p><b>제38조(규제의 재검토)</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li> <li>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li> </ol>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5.6.22.] [제38조에서 이동 &lt;2015.12.22.&gt;]</p>	<p><b>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b>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lt;개정 2015.12.30.&gt;</p> <p>②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lt;개정 2015.12.30.&gt;</p> <p><b>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li> <li>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li> <li>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li> </ol> <p><b>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미래창조과학부장관(법 제24조의3제5항 및 제17조의7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신고수리,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본조신설 2012.11.12.]</p> <p><b>제30조(규제의 재검토)</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9., 2015.12.30.&gt;</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1. 제3조제2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p> <p>2. 제4조제2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p> <p>3.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2016년 1월 1일</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12.9.&gt;</p> <p>1. 제19조에 따른 정관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p> <p>2.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등기: 2015년 1월 1일</p> <p>3. 제23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2015년 1월 1일</p> <p>4.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2015년 1월 1일</p> <p>5. 제25조에 따른 출자 및 출자증권 등: 2015년 1월 1일</p> <p>6. 제26조에 따른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2015년 1월 1일</p> <p>[본조신설 2013.12.30.]</p> <p><b>제31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2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3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4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5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6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7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8조</b> 삭제 &lt;2010.10.27.&gt;</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b>부칙</b> &lt;법률 제13583호, 2015.12.22.&gt;</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대통령령 제26767호, 2015.12.30.&gt;</p> <p>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8조제5항 관련)                      [별표 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4제1항 관련)</p>	<p><b>부칙</b> &lt;미래창조과학부령 제59호, 2015.12.31.&gt;</p> <p>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별표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3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인증마크(제6조 관련)                      [별표 2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제6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3] 신청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작성요령(제6조의2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기관현황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제9조제1항 관련) [별표 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9조제1항 관련)                      [별표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시(제11조 관련)                      [별표 6] 수수료(제13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의3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정서</p> <p>[별지 제7호의4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p> <p>[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p> <p>[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p> <p>[별지 제10호서식] 소프트웨어(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p> <p>[별지 제11호서식] (삭제) &lt;2015.12.31.&gt;</p> <p>[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p> <p>[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p> <p>[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p> <p>[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p> <p>[별지 제1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규, 변경, 합병)신고서</p> <p>[별지 제1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신규, 변경, 완료)신고서</p> <p>[별지 제18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p> <p>[별지 제1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p> <p>[별지 제20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규, 변경)신고서</p> <p>[별지 제21호서식] 근무경력확인서</p> <p>[별지 제22호서식] 기술경력확인서</p> <p>[별지 제23호서식] 삭제 &lt;2012.11.23.&gt;</p> <p>[별지 제24호서식] 삭제 &lt;2012.11.23.&gt;</p> <p>[별지 제25호서식] 삭제 &lt;2012.11.23.&gt;</p> <p>[별지 제26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p> <p>[별지 제27호서식] 경력확인 정정신청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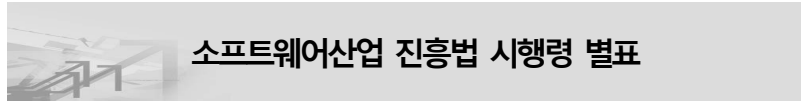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15.12.30.>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8조제5항 관련)

1.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  
가.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되어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24시간 교육전용으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를 할 것. 만일 임차일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강의·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  
다.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4.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전문교육 추진 실적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할 것
5. 교육운영조직 및 예산  
가. 교육운영조직: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나. 예산: 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 계획이 적절할 것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별표 2] <신설 2015.12.30.>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요건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조직 및 인력	가. 시험 및 교정기관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할 것 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 필수인력을 보유할 것
3. 장비 및 시설	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및 성능측정도구 등 평가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나. 시험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평가시험 공간 및 시설을 보유할 것
4. 기술역량	시험 및 교정기관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술역량을 보유할 것
5. 시험방법	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별 평가항목 및 시험절차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할 것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신설 2008.9.3.>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3조의3제1항 관련)

조직 및 인력	인증 자격요건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GUIDE 65, ISO/IEC 17025)에 적합한 조직 및 10명 이상의 시험인증 전문인력 보유
설비 및 환경	서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시험장비 보유
평가방법	소프트웨어의 유형별(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 평가모델 보유

[별표 2] <개정 2015.12.28.>

### 인증마크(제6조 관련)

1. 도안모형

<p>&lt;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gt;</p>  <p>1등급 GOOD Softwar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의 명칭 :</li> <li>2. 인증기관의 명칭 :</li> <li>3. 인증번호 :</li> </ol>
<p>&lt;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gt;</p>  <p>2등급 GOOD Softwar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인증등급 :</li> <li>5. 인증받은 자의 상호 :</li> <li>6. 제조연월일 :</li> </ol>

2. 표시방법

-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나. 인증표시는 양각색인·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소프트웨어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인증번호의 부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AA-BBBB

- 1) AA : 인증연도
- 2) BBBB : 일련번호



[별표 2의2] <신설 2015.12.3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제6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인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또는 품질성능시험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인력 6명 이상 나.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인력 4명 이상
2. 시험방법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세부 분야별 시험모형을 보유할 것

[별표 2의3] <신설 2015.12.31.>

**신청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작성요령(제6조의2제1항제3호 관련)**

<p>1. 일반현황</p> <p>가. 법인명: 한글 및 영문 명칭을 적는다.</p> <p>나. 대표자: 한글, 한자 및 영문 이름을 적는다.</p> <p>다. 소재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을 포함)를 적는다.</p> <p>라. 설립 및 등기일자</p> <p>마. 자본금</p> <p>2. 기관소개</p> <p>가. 설립목적 및 연혁</p> <p>나. 비전 및 목표</p> <p>다. 주요기능: 정관에서 정한 주요 업무내용을 적는다.</p> <p>라.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을 도식화하여 부서별 기능을 기술하고, 임·직원, 시험 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이름, 직위, 생년월일, 경력, 자격 및 주요업무내용 등을 적는다.</p> <p>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업무 추진계획</p> <p>가. 추진목적</p> <p>나. 추진전략</p> <p>다. 주요 추진내용</p> <p>라. 수행방안</p> <p>1) 시험업무 추진조직 운영방안: 품질성능 평가시험 문의, 접수 및 처리, 결과서 발급, 시험실시, 시험결과 분석·관리 등을 위한 행정, 시험, 성과관리조직의 운영방안을 적는다.</p> <p>2) 품질성능 평가시험 인력 확보방안: 품질성능 평가시험 수행을 위한 품질성능 평가시험 인력의 확보방안을 적는다.</p> <p>3)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관리방안: 시험 신청인의 등록·관리, 시험 결과의 심의, 시험 수수료, 시험 결과서 발급·관리, 시험 결과 기록의 유지·관리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관리사항을 적는다.</p> <p>마. 기타 추진업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내용을 적는다.</p> <p>바. 기대효과</p>
--

[별표 3] <신설 2008.9.3>

**기관현황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현황	<p>가. 법인명 : 한글 및 영문 명칭을 기재함</p> <p>나. 대표자 : 한글·한자 및 영문 성명을 기재함</p> <p>다. 소재지 : 주소지(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메일을 포함하여 표기)</p> <p>라. 설립 및 등기일자</p> <p>마. 자본금</p>
2. 기관소개	<p>가. 설립목적 및 연혁</p> <p>나. 비전 및 목표</p> <p>다. 주요기능 : 정관에서 정한 주요 업무내용을 기재함</p> <p>라.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을 도식화하여 부서별 기능을 기술하고 임·직원, 인증심사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직위·성명·생년월일·경력·자격 및 주요업무내용 등을 기재함</p>
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업무 추진계획	<p>가. 추진목적</p> <p>나. 추진전략</p> <p>다. 주요 추진내용</p> <p>라. 수행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업무 추진조직 운영방안 : 인증문의, 접수 및 처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 인증심사결과 분석·관리 등을 위한 행정·인증심사·성과관리조직의 운영방안을 기재함</li> <li>○ 인증심사팀 구성 및 심사인력 확보방안 : 인증심사 수행을 위한 인증심사팀의 구성과 인증심사인력의 확보방안을 기재함</li> <li>○ 인증심사 운영·관리방안 : 인증신청인의 등록·관리, 인증심사결과의 심의, 인증심사 수수료, 인증서 발급·관리, 인증심사기록의 유지·관리 등 인증심사 운영·관리사항을 기재함</li> </ul> <p>마. 기타 추진업무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내용을 기재함</p> <p>바. 기대효과</p>

[별표 4] <신설 2008.9.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9조제1항 관련)**

조 직	<p>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을 갖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조직(문서관리, 접수 및 인증서 발급 등)</li> <li>2. 인증심사조직(심사팀 구성 및 운영 등)</li> <li>3. 성과관리조직(인증심사 결과분석, 인증심사절차 개선 등)</li> </ol>
인 력	<p>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증심사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엔지니어 경력 5년 이상</li> <li>2.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li> <li>3.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3년 이상</li> </ol>
운영절차	<p>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별 운영절차를 갖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신청 및 접수 절차</li> <li>2. 심사팀 구성 및 심사절차</li> <li>3. 인증심의 방법 및 절차 등</li> </ol>

[별표 5] <개정 2012.11.23>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시(제11조 관련)

#### 1. 도안모형



1. 법인(조직) 명 :  
 2. 인증기관명 :  
 3. 인증등급 :  
 4. 인증발급일 :  
 5. 인증번호 :

#### 2. 표시방법

-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나. 인증번호의 부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AA-BB-C-DDDD

- 1) AA : 인증기관 식별 고유번호
  - 2) BB : 인증년도 (예시 : 2008년 → 08)
  - 3) C : 인증범위 (예시 : 신청기관 조직 전체 → 전, 일부 조직 → 부)
  - 4) DDDD : 일련번호
- 다. 일련번호는 인증기관별 인증발급 순서대로 부여한다.

[별표 6] <개정 2012.11.23>

### 수수료(제13조제4항 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비고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록	25,000원	최초 1회
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	연 5,000원	연간 (최초 1회 면제)
3.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2,000원	1부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진흥시설주소				
	진흥 시설 규모	전체면적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수	개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	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수	개	지원시설수	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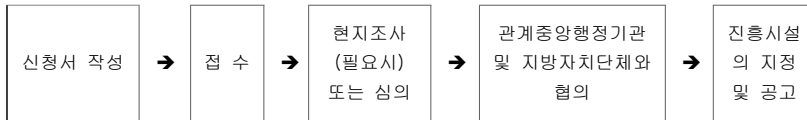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진흥단지 위치	외 필지			
	단지조성 규모	대지	전체면적		
		건축물	건축물의 수		
			건축물 연면적의 합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차지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					
입주현황	총 사업자 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수				
	지원시설의 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단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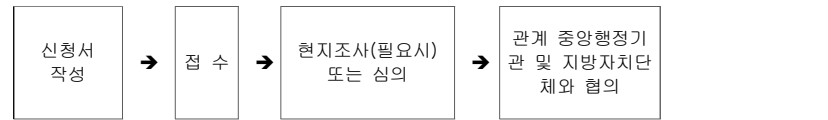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3.3.24>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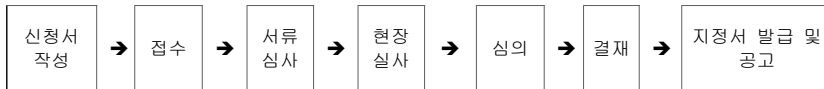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2. 교육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상 호 명(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 표 자 :
- 지정기간 : 20 . . . . ~ 20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제 호

**교육수료증**

1. 성 명 : (생년월일 : . . . )

2. 소 속 :

3. 교육기관 :

4. 교육과정 :

5.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료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품질인증 대상등급	[ ] 1등급 [ ] 2등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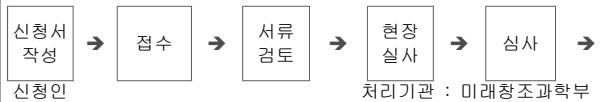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조직·시험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2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업무 담당	성명 팩스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 등급 [ ] 1등급 [ ] 2등급	
	명칭	버전
	용도	

제조사	상호	제조국
	주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28.>

제 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Certificate of Software Quality

상호 또는 성명 :  
Name of Company / Name of Applicant

소프트웨어의 명칭 :  
Name of Software

인증등급 :  
Certification Level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o.

제조사 및 제조국가 :  
Manufacturer and Country of Manufacture

인증연월일 :  
Date of Certification

기타 :  
Additional Information

위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the quality of the foregoing software has been certified under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

직인

President of Software Quality Certification Body Official Seal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 120g/㎡)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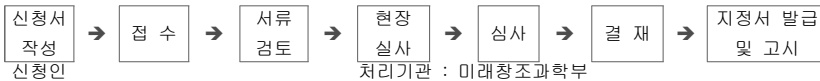
신청인 첨부서류	1. 영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별표 2의3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

1. 상 호 명(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대 표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신설 2015.12.3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사업 내용	입찰공고 명	공고번호	사업 금액		
	평가시험 분야	사업기간	. . .부터 . . .까지		
의뢰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업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평가시험 대상 제품정보 (필요 시 별지 사용)	명칭 (국문) (영문)				
	용 도				
	운영체제 (서버) (클라이언트)				
평가시험 대상 제품정보 (필요 시 별지 사용)	명칭 (국문) (영문)				
	용 도				
	운영체제 (서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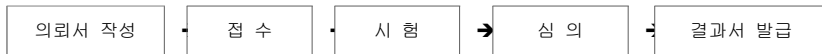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인)

시험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제품설명서 2. 평가시험 참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	------------------------------------

처 리 절 차



국가기관등의 장

처리기관: 시험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기 존	변 경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변경요청 내용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변경요청 사유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변경 영향평가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변경 소요비용	소요 비용	변경 규모	
	산출 근거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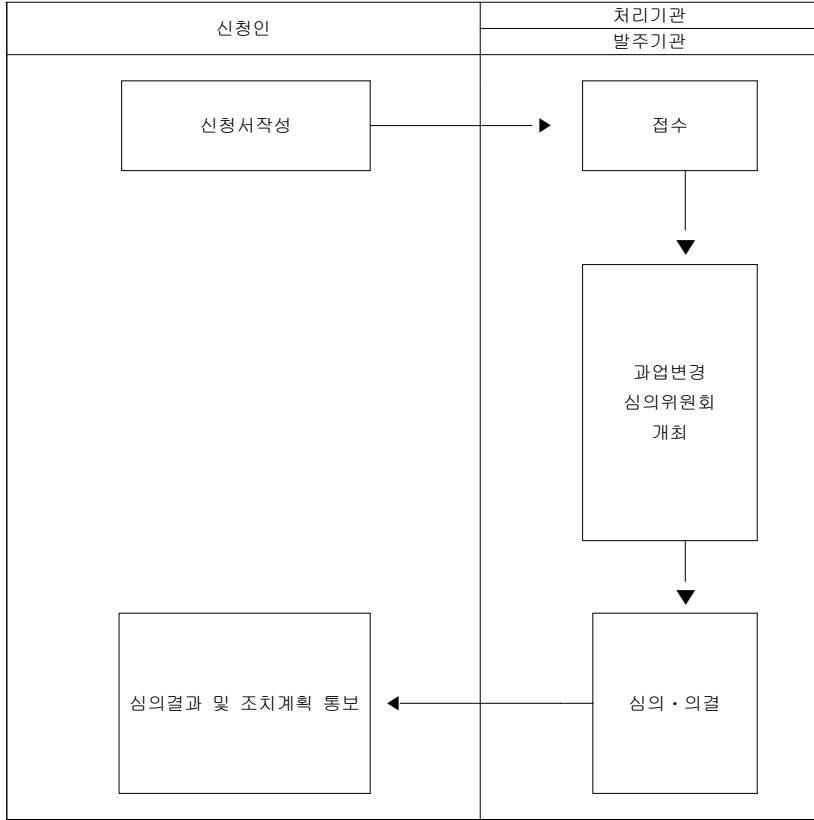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 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 쪽)

[ ] 하도급  
소프트웨어 [ ]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하도급 계 약 당 사 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부터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금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부터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금액(C)	([비율 C/B]%)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부터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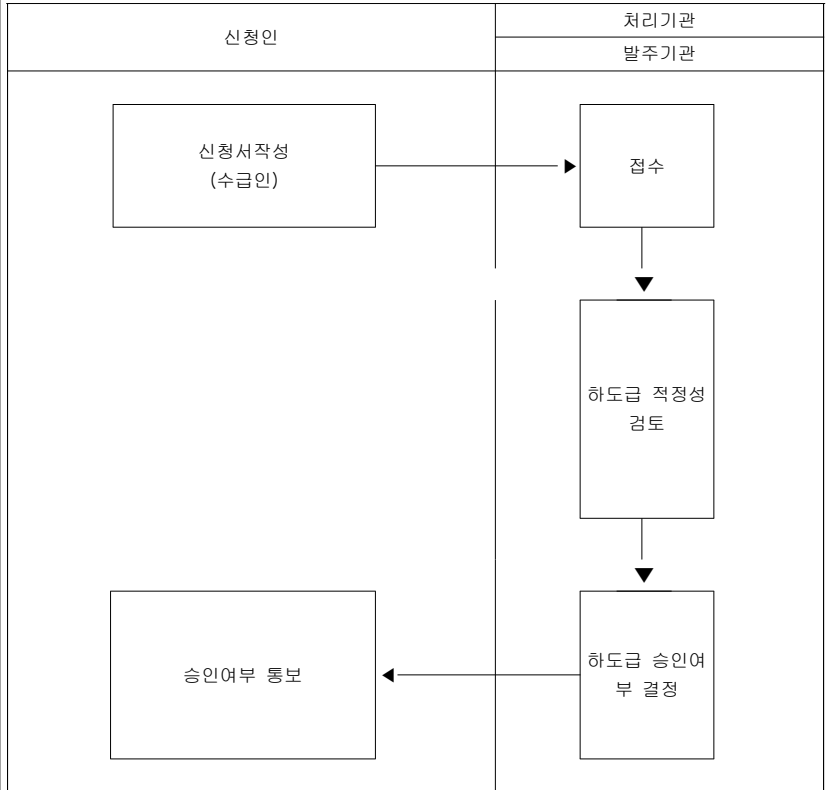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5.12.3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28.>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청기관 설립현황	설립근거									
	설립목적									
	설립일자	년	월 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의 작성요령에 따른 기관현황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사업계획서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b>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b>처 리 절 차</b>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심사	→	결 재
처리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지 정 일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  
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인증 신청 기업 현황	법인명	(한글) 대표자명 (영문)	(한글) 자명 (영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종업원	설립	년월일	자본금	억원	업태	업종
	경영간부	명	기술직	명	계	명
	사무직	명	기타	명		
담당자	부 서 명			전화번호(Fax)		
	성명/직위			전자우편주소		

인증 신청 정보	인증신청등급	[ ] 2 등급		[ ] 3 등급					
	대상조직								
	심사희망시기	1차 희망 :	년	월	일	2차 희망 :	년	월	일
	심사수행장소								

기타 사항	타 인증획득사항	인증명	등급	일자
		인증명	등급	일자
		인증명	등급	일자
	기타 인증획득 준비활동			

귀 인증기관의 인증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심사대상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
품질인증기관 담당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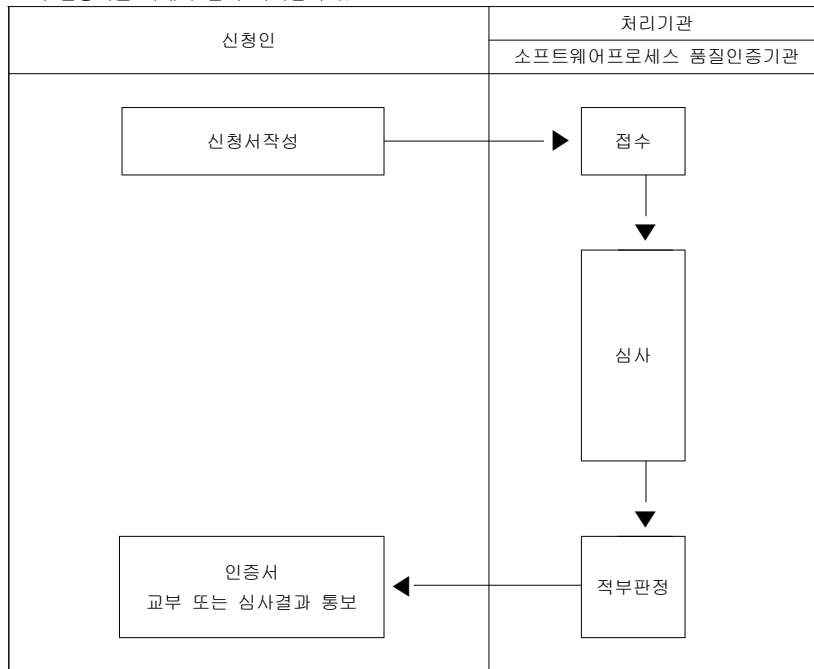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품질인증기관 담당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Certificate of Software Process Quality

1. 법인(조직)명 :  
Name of Organization
2. 대 표 자 :  
Representative
3. 소 재 지 :  
Address
4. 인 증 번 호 :  
Certification No.
5. 인 증 등 급 :  
Certification level

6. 인 증 기 간 : 20 . . . ~ 20 . . .  
Period of Certification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인증합니다.

I hereby certify the quality of the foregoing software process under Article 23.3 of the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and Article 10.3 of its Enforcement Decree.

년(Year) 월(Month) 일(Day)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직인

President of the Software Process Quality Certification Body  
Republic of Korea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 쪽)

[ ] 신규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변경 신고서  
[ ] 합병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고분야	[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 ]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 [ ]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법인등록번호
------	--	--------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설립년월	년	월
-----	------	---	---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전업 구분	[ ] 소프트웨어사업 전업 [ ] 기타 겸업	상시종업원수	(소프트웨어기술자: 명)
----------	-----------------------------	--------	---------------

기업형태	[ ] 개인 [ ] 법인 [ ] 상장 [ ] 코스닥 [ ] 비상장(비등록)
------	---

재무현황 (년도)	자산	부채	자본금	매출액 (소프트웨어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미만)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이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	---

양도회사 (합병신고 시 기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폰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허위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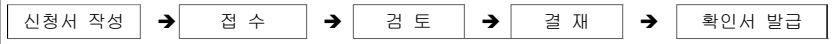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합니다.
2. 합병신고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법인전환 포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분야는 실제 사업을 경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공고 사업의 입찰 참여 시 부여되는 업종코드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426)  
-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1469)  
-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1470)
4. 회사명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5.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6. 본사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7. 회사의 모든 매출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8. 상시종업원수는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 내 상시종업원수를 적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상시종업원 중에서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종업원수를 적습니다.
9.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적습니다.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도 확인하여 적습니다.
11. 합병신고 시,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담당자는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
13.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신고업무수행기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 쪽)

[ ] 신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 ] 변경 신고서  
[ ] 완료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자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일반현황	사업명	원사업명	계약번호
		사업명	
수급형태 [ ] 단독수급 [ ] 공동수급 ([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하수급			
산업분야		사업분야	
발주자 현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구분 [ ] 공공 [ ] 민간	소재지	
	실수요기관		

수급자 현황	원수급자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상대자	계약	법인등록번호			
	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 현황	총 계약금액(원)	공동수급자수	지분율		
	계약기간(년월일)	계약금액(원)	이행완료일	최종매출액	
보증서 발급현황	보증 종류	보증 기관	보증서 번호	발급일	보증 금액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 번호	전자 메일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허위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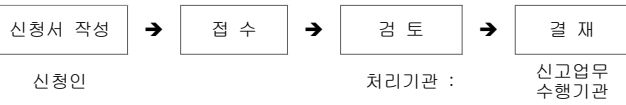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 신고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신고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실적을 신고하실 경우에는 “신규”를 선택하십시오.
  - 신규신고 이후에 2차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을 선택하십시오.
  -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신고하실 경우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 신고회사의 정보(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재합니다.
- 사업일반현황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원사업명”은 하수급의 경우만 기재하며, 발주자와 원수급자 간의 계약을 맺은 사업명(계약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명”은 신고자와 계약자(단독/공동수급의 경우 발주자) 간의 계약명을 기재합니다.
  - “계약번호”는 원수급자(공동수급자 포함)가 조달청 등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발주자와 단독계약, 공동수급:2개 이상의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체결, 하수급:같은 법의 하도급 승인 규정에 의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기재합니다.
  - “산업분야” 및 “사업분야”는 정보통신산업 분류표 참조
- 발주자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구분을 공백 없이 기재합니다.
  - “실수요기관”은 발주기관과 실수요기관이 틀린 경우에만 기재하며, 실수요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지역”은 분류표 참조
- 수급자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원수급자 회사명”은 하수급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발주자와 본 사업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자를 기재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상의 계약상대자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단독/공동수급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원수급자와 같을 경우 동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공동수급현황은 공동수급일 경우에만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총계약금액”은 공동수급자 전체의 총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
  - 공동수급자 수를 기재합니다.
  - “지분율”은 총 계약금액 중 신고자의 지분율(계약서 상)을 기재합니다.
-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계약금액”은 본 사업의 계약금액(공동수급인 경우 신고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행완료일”은 사업의 이행완료일자(검수완료일 등)를 기재합니다(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최종매출액”은 이행완료된 사업인 경우 본 사업으로 발생한 최종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재합니다.
- 보증서발급현황은 계약이행보증, 선금금보증 등 보증서 발급현황을 기재합니다.
- 신고담당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2.31.>

신고번호 :  
 발급번호 :  
 출력일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매 출 액 : 억원(소프트웨어분야 매출액) 억원  
 5. 상시종업원수: 명(소프트웨어기술자 : )명  
 6. 신고일자 :  
 7. 사업분야 :  
 8.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억원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의 사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1.23>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제출처			용도			
참여사업명						

사업수행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의 사항

1. 계약금액은 신고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처는 원 발주처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공란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고기업에서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시스템  
(career.sw.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 ] 신규  
[ ]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성명	(한글)	증명사진 (3cm×4cm)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자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 )	

현 근무처 사항	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근무처경력	근무기간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업무	부서/직위
	~				
	~				
	~				

소프트웨어 기술자격 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취득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상훈사항	수여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기술경력사항

연번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1		~			
2		~			

※ 각 경력항목 초과 시 별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이 신고서 및 구비서류는 사실 그대로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향후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신고한 내용이 경력 등의 관리업무를 위해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경력관리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졸업증명서(인터넷발급본인 경우 사본가능/진위여부 확인 가능 기간 내의 서류 제출.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li> <li>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경력확인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li> <li>3. 경력 및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4. 교육수료증, 교육이수확인서, 표창장 등 사본</li> <li>5. 증명사진 2매(전자신청 시에는 온라인 등록 가능)</li> </ol> <p>※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해당 증명서류만 제출합니다.</p>
경력관리기관 담당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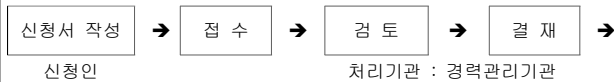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경력관리기관의 담당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작성 방법

1. 각 항목별 세부작성요령은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11.23>

**근무경력확인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속 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번	근무기간	담당업무	부서/직위	비고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성명	부서	연락처
-----	----	----	-----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기관의 장 귀하

작성 방법

1. “담당업무”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확인자”는 확인서를 발급한 해당 회사의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11.23>

**기술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속회사 (발주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근무기간	

기술경력

연번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수행업무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경력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부서	연락처
-----	----	----	-----

년 월 일

회사명 또는 발주자:

대표자 또는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기관의 장 귀하

작성 방법

1. “수행업무”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확인자”는 확인서를 발급한 해당 회사(또는 발주처)의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3. 폐·휴업 등으로 근무했던 회사로부터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2.11.23>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2.11.23>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12.11.23.>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11.23>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현 근무처 사항	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		
근무처경력	확인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		부서/직위
		~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교육사항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기술경력사항	확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	소속사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기관의 장



#### 유의 사항

1. 근무처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격사항, 학력사항, 교육사항, 상훈사항, 기술경력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근무처경력과 기술경력사항의 “확인”란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사항과 미확인된 사항을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고시 · 공고**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p>제 정 2000.11.1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 -83호                      일부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6호                      일부개정 2012. 7.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9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0호                      타법개정 2013.12.3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6호                      일부개정 2014.11.2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83호</p>	<p>② 영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소프트웨어 교육시설                      4.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p>
<p><b>제1조(목적)</b>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4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조건)</b> ① 진흥시설내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 한다.</p>
<p><b>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대상)</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p>	<p><b>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b> ①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 등의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p>
<p><b>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b> ① 영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6. &lt;삭 제&gt;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8.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b>제6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변경)</b> ① 영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p>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b>제7조(자료의 제출)</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8조(재검토기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4-83호, 2014.11.20&gt;</p> <p>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별지 제1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 <p style="text-align: center;">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성사업자 상호명(기관명) :</li> <li>2. 대 표 자 :</li> <li>3. 시 설 소 재 지 :</li> <li>4. 형 태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미래창조과학부장관</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직인</div> </div> </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210mm×297mm(백상지 120g/㎡)</p>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변경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변경 내용 (해당 사항만 기재)	진흥시설주소				
	진흥 시설 규모	전체면적	m <sup>2</sup>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차지하는 면적	m <sup>2</sup>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m <sup>2</sup>	공동이용시설 이 차지하는 면적	m <sup>2</sup>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수	개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	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수	개	지원시설수	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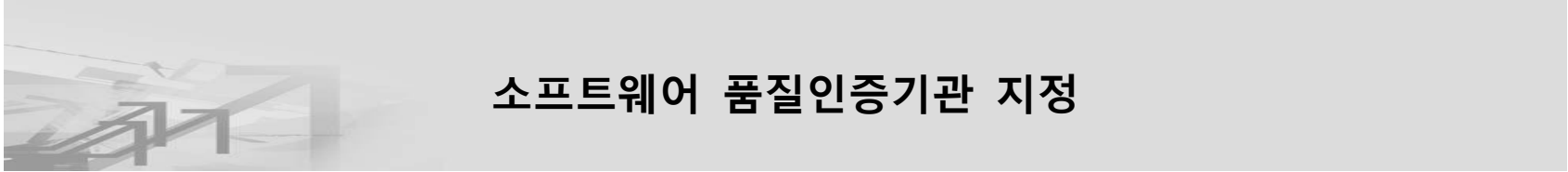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right;">제 정</td> <td style="width: 15%;">2003. 1. 8.</td> <td style="width: 25%;">정보통신부 고시</td> <td style="width: 50%;">제2003 - 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td> <td>2008. 11.6.</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8-156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td> <td>2009. 8.26.</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9-194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td> <td>2012. 8.21.</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2-207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td> <td>2013. 9. 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41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td> <td>2015.12.30.</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5-111호</td> </tr> </table> <p><b>1.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연구소)</b></p> <p>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p> <p>나. 대표자 : 임차식</p> <p>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21개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SW : 유틸리티SW, 정보보호SW, 시스템관리SW, 미들웨어SW, 운영체제SW, 바이오메트릭스SW, 통신SW</li> <li>- 개발용SW : 데이터 관리용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젝트 관리용SW</li> <li>- 응용SW : 기업관리SW, 산업용SW, 일반사무용SW, 멀티미디어/게임용SW, 과학용(교육용) SW, GIS SW</li> <li>- 디지털콘텐츠 SW : 디지털 콘텐츠SW, 콘텐츠개발SW</li> <li>-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OS, 임베디드 미들웨어SW, 임베디드 응용SW</li> </ul> <p>라. 인증등급 : 1, 2등급</p> <p>마. 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8. 11. 06</p> <p><b>2.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b></p> <p>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p> <p>나. 대표자 : 이원복</p> <p>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7개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SW : 정보보호SW, 시스템관리SW</li> <li>- 응용SW : 기업관리SW, 산업용SW</li> <li>-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OS, 임베디드 미들웨어SW, 임베디드 응용SW</li> </ul> <p>라. 인증등급 : 1등급</p>	제 정	2003. 1. 8.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 - 2호	일부개정	2008. 11.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6호	일부개정	2009. 8.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4호	일부개정	2012.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7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1호	일부개정	2015.12.3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1호	<p>마. 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8. 11. 06</p> <p><b>3. 행정사항 : 재검토기한</b></p> <p>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1호, 2015.12.30.&gt;</p> <p>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 정	2003. 1. 8.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 - 2호																						
일부개정	2008. 11.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6호																						
일부개정	2009. 8.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4호																						
일부개정	2012.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7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1호																						
일부개정	2015.12.3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1호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table border="0"> <tr> <td>제정</td> <td>2008. 11. 6.</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8-155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09. 7. 7.</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9-136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2. 8. 21.</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2-206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3. 9. 6.</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3-142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4. 11. 2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4-85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5. 12. 28.</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5-108호</td> </tr> </table>	제정	2008. 1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5호	일부개정	2009. 7. 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6호	일부개정	2012. 8. 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6호	일부개정	2013. 9.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42호	일부개정	2014. 11. 2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5호	일부개정	2015. 12. 2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8호	<p>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p> <p>9. "신뢰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p> <p>10. "사용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p> <p>11. "효율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투입된 자원에 대하여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말한다.</p> <p>12. "유지보수성"이라 함은 요구사항 및 환경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선·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p> <p>13. "이식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p> <p>14. "행정기관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p> <p>15.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제품"이라 함은 행정기관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용SW를 말한다.</p> <p>16. "업무적합성 평가"이라 함은 신청자의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훈련, 신뢰성 및 행정업무적합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17. "업무적합성 기술서"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제2조제16호를 평가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p>
제정	2008. 1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5호																						
일부개정	2009. 7. 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6호																						
일부개정	2012. 8. 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6호																						
일부개정	2013. 9.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42호																						
일부개정	2014. 11. 2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5호																						
일부개정	2015. 12. 2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8호																						
<p><b>제1조(목적)</b>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용어의 정의)</b>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li> <li>2. "소프트웨어제품"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을 말한다.</li> <li>3. "품질인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li> <li>4. "시험평가기준"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 분야별 시험 절차, 항목 및 기준치를 말한다.</li> <li>5. "인증마크"라 함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심사를 수행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 등에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li> <li>6. "제품설명서"라 함은 구매자가 그 제품이 합당한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li> <li>7. "사용자취급설명서"라 함은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li> <li>8. "기능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요구된 기능을 제공할</li> </ol>																									
	<p><b>제3조(인증 대상)</b>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li> <li>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li> <li>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li> <li>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li> </ol>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p><b>제4조(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b>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대한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듈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4조의2(품질인증의 기준)</b> ①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별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 품질평가 점수가 80점 이상(100점 기준)</li> <li>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 품질평가(60%)와 업무적합성 평가(40%)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100점 기준)</li> </ol> <p>② 제1항제1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p> <p>③ 제1항제2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은 제7조의2의 기준을 적용한다.</p> <p><b>제5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b> ① (일관성 등) 제품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p> <p>② (소프트웨어식별내용 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제조년월일, 공급자명, 공급자주소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li> <li>2. 소프트웨어의 용도</li> <li>3. 소프트웨어 개발시 적용한 표준, 권고안 등</li> <li>4. 하드웨어 사양,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환경</li> <li>5. 소프트웨어제품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li> <li>6.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li> <li>7. 소프트웨어제품문의 등 고객 지원 방법</li> <li>8. 유지보수의 내용</li> </ol> <p>③ (기능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li> <li>2. 입력값의 범위, 레코드의 최대 길이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계값</li> <li>3. 타인에 의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li> </ol> <p>④ (신뢰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력데이터가 적절하지 여부의 점검</li> <li>2. 사용자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의 방지 가능성</li> <li>3. 오류 발생시 복구 방법</li> </ol>	<p>⑤ (사용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태표시줄, 도구모음, 아이콘 등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li> <li>2. 기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li> <li>3.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의해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li> <li>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인 방지 장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li> <li>5.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및 사용자만족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li> </ol> <p>⑥ (효율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응답시간, 처리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p> <p>⑦ (유지보수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 및 그 해결에 관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p> <p>⑧ (이식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데이터의 호환성, 다른 사용환경으로의 이식절차·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p> <p><b>제6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b> ① (완전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정보</li> <li>2. 제5조제3항제1호에 명시된 기능 및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모든 기능</li> <li>3. 제5조제3항제2호에 명시된 경계값</li> <li>4.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법</li> <li>5.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법</li> </ol> <p>② (정확성 및 일관성) 사용자취급설명서의 모든 내용은 정확하여야 하며 모호하지 않고 오류가 없어야 하며, 사용자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사용자취급설명서내의 용어와 일치하여야 한다.</p> <p>③ (이해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해당 업무를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p> <p>④ (개요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자취급설명서의 구조 및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li> <li>2.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목차와 색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i> <li>3. 사용자취급설명서가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인쇄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li> </ol>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p><b>제7조(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b> ① (기능성) 운영 중에 기능의 정확한 동작, 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 및 보안 환경 등의 속성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제품설명서 및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한다.</li> <li>2. 소프트웨어 출력 결과 값은 정확해야 하며, 정밀도를 요구하는 출력 값의 경우는 규정된 정밀도를 준수해야 한다.</li> <li>3. 다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과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규정된 포맷으로 통신해야 하며, 데이터 교환 중에 손실이나 변경 없이 정확하게 송수신해야 한다.</li> <li>4. 보안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보안 감사, 접근 통제, 데이터 변조 방지 등의 보안 기능이 있어야 한다.</li> </ol> <p>② (신뢰성) 규정된 조건에서 성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작동 및 오입력 등의 사용자의 오류에 대하여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li> <li>2. 입력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처리하여야 한다.</li> <li>3. 실행 취소, 자체 복구 기능 등이 있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복구 되어야 한다.</li> </ol> <p>③ (사용성) 규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의해 이해 및 학습이 쉽고, 사용의 편리성 등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입력데이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메시지 및 실행 결과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li> <li>2. 오류 발생 시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li> <li>3.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li>4.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거나, 오류 발생 전에 그 결과에 대한 경고 및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li> </ol> <p>④ (효율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적 반응 및 사용되는 자원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정된 응답시간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응답시간을 만족하여야 한다.</li> <li>2. 제시된 최소의 시스템 사양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시 시스템 자원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li> <li>3. 부하 발생 및 대용량 작업 시에 소프트웨어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li> </ol>	<p>⑤ (유지보수성) 소프트웨어가 수정되거나 관리될 때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시스템, 사용자 또는 유지관리자들의 활동에 관한 속성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자는 소프트웨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 원인, 분석 및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li> <li>2.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자가 쉽게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li> <li>3. 소프트웨어의 결함 수정 및 변경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야 한다.</li> </ol> <p>⑥ (이식성)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서 사용될 때 적용 및 설치 등에 대한 속성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시된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의 환경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li> <li>2. 사용자가 설치하기 쉬워야 한다.</li> <li>3. 타 소프트웨어와 공존하여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li> </ol> <p><b>제7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기준)</b> ①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 2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제5조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li> <li>2. (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li> <li>3. (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제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li> </ol> <p><b>제8조(품질인증기관)</b> ①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p>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인증대상 지정분야 및 등급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li> <li>2.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듈 제정</li> <li>3.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 제정</li> <li>4. 기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li> </ol> <p>③ 각각의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질인증 업무의 객관성</li> <li>2. 시험평가 수수료 산출</li> <li>3. 기타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li> </ol>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p>④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신청현황, 인증현황 등의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9조(품질인증 신청)</b>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설명서</li> <li>2. 사용자취급설명서</li> <li>3. (삭제)</li> <li>4. (삭제)</li> <li>5. (삭제)</li> <li>6.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에 한함)</li> </ol>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제3조와 제4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여부를 검토한다.</p> <p>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을 검토한 후 시험평가를 수행하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반려한다.</p> <p>⑤ (삭제)</p> <p>⑥ 신청인은 품질인증 신청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b>제10조(품질인증 심사절차)</b>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이 있을 때는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한다.</p> <p>② 제1항의 품질인증심사는 품질인증심의위원회, 현장(사업장)심사 및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담당간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품질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④ 제2항의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은 제13조에 따른다.</p> <p>⑤ 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시험절차서를 작성할 수 있다.</p> <p>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터 14일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자 및</p>	<p>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심의회에 반영할 수 있다.</p> <p><b>제11조(품질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b> ①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li> <li>2. 국·공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li> <li>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나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li> <li>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li> <li>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li> </ol> <p>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p> <p>④ 간사는 전반적인 인증절차를 관리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p> <p>⑤ 심의위원회는 시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라 시험평가기준, 평가결과 및 현장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li> <li>2. 대상제품의 인증범위 적정성</li> <li>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된 주요사항</li> </ol> <p>⑥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b>제12조(시험평가기준 제정 등)</b> ① 인증기관의 장은 KS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평가기준을 신청품목별로 제정할 수 있다.</p>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평가기준 등을 제정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기준제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험평가기준제정 전문위원회에서 시험평가기준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자체개발하여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평가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p><b>제13조(시험평가)</b>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 6항에 따른 세부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제정한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소프트웨어 운영상 현장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운영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현장시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시험평가 중 소프트웨어 등의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3회에 한하여 보완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 <p><b>제14조(현장심사)</b> ① 인증기관의 장은 현장심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현장심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공정, 테스트 공정 등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환경을 점검하여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팀은 현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5조(인증서 교부등)</b>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가 시험평가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제품이 저작권, 특허 등 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합으로 판정할 수 없다.</p>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lt;삭 제&gt;</p> <p>④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결과를 지원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한다.</p> <p><b>제16조(표시)</b>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2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마크』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한 표시는 제품,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p> <p><b>제17조(이의신청)</b> ①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공고 후 3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의 주소, 성명</li> </ol>	<p>2.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b>제18조(인증서 변경)</b>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정정하고 재교부하며,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변경</li> <li>2. 사업체 양도·양수</li> <li>3. 제품의 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li> </ol> <p>③ 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p> <p><b>제18조의2(품질인증 등급 변경)</b> ①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품질인증으로 등급을 변경하고자 신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등급별 차이에 따른 평가항목만 시험하여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인증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b>제19조</b> 삭제</p> <p><b>제20조</b> 삭제</p> <p><b>제21조(인증비용 산출)</b> ① 인증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인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p> <p>② 인증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인증기관은 제1항의 인증비용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된 인증기관의 시험수수료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p> <p><b>제22조(수당 및 여비)</b>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위한 회의참석자, 현장심사자, 시험평가기준안 작성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23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b> 인증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p><b>제24조(재검토기한)</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5-108호, 2015.12.28.&gt;</p> <p><b>제1조(시행일)</b>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경과조치)</b>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제4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행정자치부 고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에 따라 선정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품은 제4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③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행정자치부 고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제7조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제4조의2제2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b></p> <table border="1" data-bbox="975 361 1781 1253"> <thead> <tr> <th>중분류</th> <th>소분류</th> <th>설 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시스템 SW</td> <td>운영체제SW</td> <td>Window계열, 공개 SW 등 OS관련 SW</td> </tr> <tr> <td>통신SW</td> <td>네트워크, 유·무선 통신망관리, 통신프로토콜 지원, 통신 응용 SW 등</td> </tr> <tr> <td>유틸리티 SW</td> <td>Web서비스 용 등 컴퓨터의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보조하여 시스템을 유지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SW</td> </tr> <tr> <td>시스템관리 SW</td> <td>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전산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td> </tr> <tr> <td>정보보호 SW</td> <td>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W), 안티바이러스·스팸SW, 시스템 및 App 보안 SW, 암호·인증SW 등</td> </tr> <tr> <td>미들웨어 SW</td> <td>사용자의 특정 요구로 만들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해 이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td> </tr> <tr> <td>바이오메트릭스 SW</td> <td>지문인식, 음성인식, 홍채인식 등 바이오메트릭스 관련 SW</td> </tr> <tr> <td>기타 SW</td> <td>기타 시스템 SW</td> </tr> <tr> <td rowspan="4">개발용 SW</td> <td>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td> <td>프로그램 개발툴, 소스코드 검사 툴, 컴포넌트 도구, WAS 등</td> </tr> <tr> <td>프로젝트 관리용 SW</td> <td>테스트 관리 SW, 프로젝트 관리 SW 등</td> </tr> <tr> <td>데이터 관리용 SW</td> <td>DBMS, DB리포팅 SW 등 DB관리용 SW</td> </tr> <tr> <td>기타 SW</td> <td>기타 개발용 SW</td> </tr> </tbody> </table>	중분류	소분류	설 명	시스템 SW	운영체제SW	Window계열, 공개 SW 등 OS관련 SW	통신SW	네트워크, 유·무선 통신망관리, 통신프로토콜 지원, 통신 응용 SW 등	유틸리티 SW	Web서비스 용 등 컴퓨터의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보조하여 시스템을 유지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SW	시스템관리 SW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전산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SW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W), 안티바이러스·스팸SW, 시스템 및 App 보안 SW, 암호·인증SW 등	미들웨어 SW	사용자의 특정 요구로 만들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해 이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	바이오메트릭스 SW	지문인식, 음성인식, 홍채인식 등 바이오메트릭스 관련 SW	기타 SW	기타 시스템 SW	개발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그램 개발툴, 소스코드 검사 툴, 컴포넌트 도구, WAS 등	프로젝트 관리용 SW	테스트 관리 SW, 프로젝트 관리 SW 등	데이터 관리용 SW	DBMS, DB리포팅 SW 등 DB관리용 SW	기타 SW	기타 개발용 SW
중분류	소분류	설 명																												
시스템 SW	운영체제SW	Window계열, 공개 SW 등 OS관련 SW																												
	통신SW	네트워크, 유·무선 통신망관리, 통신프로토콜 지원, 통신 응용 SW 등																												
	유틸리티 SW	Web서비스 용 등 컴퓨터의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보조하여 시스템을 유지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SW																												
	시스템관리 SW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전산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SW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W), 안티바이러스·스팸SW, 시스템 및 App 보안 SW, 암호·인증SW 등																												
	미들웨어 SW	사용자의 특정 요구로 만들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해 이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																												
	바이오메트릭스 SW	지문인식, 음성인식, 홍채인식 등 바이오메트릭스 관련 SW																												
	기타 SW	기타 시스템 SW																												
개발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그램 개발툴, 소스코드 검사 툴, 컴포넌트 도구, WAS 등																												
	프로젝트 관리용 SW	테스트 관리 SW, 프로젝트 관리 SW 등																												
	데이터 관리용 SW	DBMS, DB리포팅 SW 등 DB관리용 SW																												
	기타 SW	기타 개발용 SW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응용 SW	일반사무용 SW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등 비즈니스에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관리 SW	ERP, CRM, SCM, 협업 App. 등
	과학용(교육용) SW	과학 및 교육전반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용 SW	산업전반에 활용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게임 SW	멀티미디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GIS SW	상하수도시설을 관리, 도로시설물관리 등 지리정보 SW
	기타응용SW	기타 응용 SW
디지털 콘텐츠 SW	디지털 콘텐츠 SW	디지털 콘텐츠 SW
	콘텐츠 개발 SW	정보용 디지털 콘텐츠, 오락, 게임용 디지털콘텐츠 등
	기타 SW	기타 디지털 콘텐츠 SW
임베디드 SW	임베디드 OS	임베디드 OS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 GUI 도구 등을 포함
	임베디드 미들웨어 SW	CODEC, Network Protocol Stack, 임베디드 Virtual Machine 등
	임베디드 응용 SW	PIMS, 기기내장 어플리케이션, 기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별표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 산출기준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은 인건비, 직접비, 제경비, 기술료, 인증비로 구성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 = \text{평가비(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text{인증비}$$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별	적 용 범 위	산 출 기 준
▪ 인 건 비	○ 시험 기간과 투입 인력에 따른 비용 ※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준용	시험기간(일) × 일 노임단가
▪ 직접경비	○ 시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 ※ 출장비, 장비사용료 등 실 소요비용	실제 소요비용
▪ 제 경 비	○ 인건비 및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시험 및 인증 업무의 행정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간접경비	인증기관 내부기준
▪ 기 술 료	○ 보유기술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 (조사 연구비, 기술개발비/훈련비 등)	인증기관 내부기준
▪ 인 증 비	○ 인증심의, 인증조직원 등에 관련이 있는 비용	인증기관 내부기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종합평가보고서</b></p> <p>1. 신청 업체 현황(※ 심의위원회 상정시 생략 가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5%;">업체명</td> <td style="width: 35%;"></td> <td style="width: 15%;">대표자</td> <td style="width: 35%;"></td> </tr> <tr> <td>설립연월일</td> <td></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r> <tr> <td>제품명</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주소</td> <td>본사</td> <td colspan="2"></td> </tr> <tr> <td>사업장</td> <td colspan="2"></td> </tr> <tr> <td>자본금</td> <td></td> <td>전화번호 팩스번호</td> <td></td> </tr> <tr> <td>종업원수</td> <td colspan="3"></td> </tr> <tr> <td>사업분야</td> <td colspan="3"></td> </tr> </table> <p>2. 신청 제품 개요</p> <p>가. 제품의 용도 및 기능</p> <p>나. 기술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개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인력 :</li> <li>- 개발장비 :</li> <li>- 개발언어 :</li> </ul> </li> <li>◦ 국산화율 :</li> <li>◦ 특허 및 인증여부 :</li> </ul>								업체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				주소	본사			사업장			자본금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사업분야				<p>3. 평가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자 :</li> <li>◦ 현장심사 :</li> <li>◦ 제품시험평가 :</li> <li>◦ 심의위원회 :</li> </ul> <p>4. 현장심사 및 제품시험평가 결과</p> <p>가. 현장심사 결과</p> <p>나. 제품시험평가 결과</p> <p>5. 종합의견</p>			
업체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																																										
주소	본사																																									
	사업장																																									
자본금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별지 제2호서식】

현장심사 보고서

신청업체명 :

신청제품명 :

200 . . . .

심사자 : (서명)

(서명)

(서명)

1. 일반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진 화	
종업원 수		주 생산 제품	
신청품목명		신청품목 개발기간	

[ 용도 및 주요기능 ]

[ 실사결과요약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p>2. 개발환경</p> <p>&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li> <li>◦요구사항 분석 기술</li> <li>◦개발관리 매뉴얼 등 활용 여부</li> <li>◦개발관리 체계</li> <li>◦형상관리 체계</li> <li>◦신형제품 업그레이드</li> </ul> <p>3. 시험환경</p> <p>&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장비 보유현황(H/W, SW 등)</li> <li>◦시험인력 보유현황</li> <li>◦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및 전담인력 보유</li> <li>◦교육지원체계 운영 현황</li> </ul> <p>4. SW품질관리환경</p> <p>가. 개발방법론 적용여부</p> <p>나. 품질관리공정 운영여부</p> <p>다. 신뢰성 데이터 관리여부(고장밀도, 결함밀도, MTBF등)</p>	<p>[별지 제3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업무적합성 기술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평가항목</th> <th style="width: 25%;">평가요소</th> <th style="width: 60%;">기술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유지보수 및 운영</td> <td>유지보수 및 오류복구(장애처리) 지원 체계</td> <td></td> </tr> <tr> <td>유지보수 전담 조직 및 인력</td> <td></td> </tr> <tr> <td rowspan="2">교육훈련</td> <td>교육훈련 지원 체계</td> <td></td> </tr> <tr> <td>교육훈련 전담 조직 및 인력</td> <td></td> </tr> <tr> <td rowspan="4">업체 신뢰성</td> <td>저작권 보유 여부</td> <td></td> </tr> <tr> <td>제품의 납품실적</td> <td></td> </tr> <tr> <td>기술보유 및 수상실적</td> <td></td> </tr> <tr> <td>재무안정성 및 제품매출정도</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10mm×297mm(백상지 80g/㎡)</p>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술내용	유지보수 및 운영	유지보수 및 오류복구(장애처리) 지원 체계		유지보수 전담 조직 및 인력		교육훈련	교육훈련 지원 체계		교육훈련 전담 조직 및 인력		업체 신뢰성	저작권 보유 여부		제품의 납품실적		기술보유 및 수상실적		재무안정성 및 제품매출정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술내용																					
유지보수 및 운영	유지보수 및 오류복구(장애처리) 지원 체계																						
	유지보수 전담 조직 및 인력																						
교육훈련	교육훈련 지원 체계																						
	교육훈련 전담 조직 및 인력																						
업체 신뢰성	저작권 보유 여부																						
	제품의 납품실적																						
	기술보유 및 수상실적																						
	재무안정성 및 제품매출정도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 ④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 정 2005. 4.16. 정보통신부 공고 제2005 -22호                      일부개정 2009. 6.22.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48호                      일부개정 2011. 9.30.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95호                      일부개정 2012. 7. 4.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99호                      일부개정 2015. 7.10.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310호</p> <p><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이라 한다)1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용어의 정의)</b>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SW기업자"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li> <li>2. "GS인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실시된 SW 품질인증을 말한다.</li> <li>3. "GS인증제품"이라 함은 GS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경우 GS인증을 받은 버전에 한한다.</li> <li>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가기관</li> <li>나. 지방자치단체</li> <li>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li> <li>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li> <li>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li> <li>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li> </ul> </li> <li>5.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4호의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자의 GS인증제품 우선구매조치의 요청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우선구매 요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li> </ol>	<p><b>제3조(우선구매조치의 요청)</b> ① 중소기업자는 GS인증제품이 공공기관에 의해 우선구매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대상기관이 우선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명단에 구매가 가능한 기관명만을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4조(전문기관의 검토 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요청된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대상기관에 요구하기 전에 동 제품의 구매적합성, AS 지원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뢰받은 GS인증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5조(우선구매 지원기준)</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GS인증제품에 대해 제3조에 의한 우선구매 지원요청서, 제4조에 의한 검토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에 동 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b>제6조(수의계약)</b> 대상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한 GS인증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p> <p><b>제7조(우선구매 조치결과 통보)</b> ① 대상기관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조치 요구를 승인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우선구매조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8조(정보제공)</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GS인증제품 목록 등을 공표하고 그 내용을 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p> <p><b>제9조(업무의 위탁)</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지원요청서 접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서의 검토,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통보,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할</p>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p>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5-310호, 2015.7.10&gt;</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재검토기한)</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colspan="15">우 선 구 매 지 원 요 청 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신 청 인</td> <td colspan="3">1. 업체명</td> <td colspan="3">2. 사업자등록번호</td> <td colspan="3">5. 전년도 매출액</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3">3. 총자산</td> <td colspan="3">4. 상시종업원수</td> <td colspan="3"></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3">6. 성 명</td> <td colspan="3">7. 생년월일</td> <td colspan="3"></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3">8. 업체주소</td> <td colspan="3"></td> <td colspan="3">9. 전화번호 (휴대폰)</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GS인증제품의 주요내용</td> <td colspan="2">10. 제품명</td> <td colspan="2">11. GS인증 획득일</td> <td colspan="2">12. 직접구매 가능여부</td> <td colspan="2">13. A/S 계획</td> <td colspan="2">14. 납품 실적</td> <td colspan="2">15. 조달청 단가계약여부</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별첨" (서식2)</td> <td colspan="2">"별첨" (서식3)</td> <td colspan="2">"별첨" (서식4)</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16. 우선구매조치 대상기관명</td> <td colspan="5">17. 우선구매조치대상 기관 담당자 (연락처)</td> <td colspan="5"></td> </tr> <tr> <td colspan="15" style="height: 100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p> </td> </tr> <tr> <td colspan="12">첨부서류</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수 수 료</td> </tr> <tr> <td colspan="12">                     1. GS인증서 사본 3부                      2.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직접구매 가능성 상세 설명서 3부                      3.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A/S 계획서 3부                      4.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납품실적서 3부                 </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없 음</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p> <p>※ 15. 조달청 단가계약여부는 O, X로 표시</p> <p>※ 16. 우선구매를 요청할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구매가 가능한 기관만을 선정하여 기재</p>	우 선 구 매 지 원 요 청 서															신 청 인	1. 업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			5. 전년도 매출액						3. 총자산			4. 상시종업원수									6. 성 명			7. 생년월일									8. 업체주소						9. 전화번호 (휴대폰)						GS인증제품의 주요내용	10. 제품명		11. GS인증 획득일		12. 직접구매 가능여부		13. A/S 계획		14. 납품 실적		15. 조달청 단가계약여부						"별첨" (서식2)		"별첨" (서식3)		"별첨" (서식4)				16. 우선구매조치 대상기관명					17. 우선구매조치대상 기관 담당자 (연락처)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p>															첨부서류												수 수 료			1. GS인증서 사본 3부 2.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직접구매 가능성 상세 설명서 3부 3.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A/S 계획서 3부 4.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납품실적서 3부												없 음		
우 선 구 매 지 원 요 청 서																																																																																																																																																						
신 청 인	1. 업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			5. 전년도 매출액																																																																																																																																															
	3. 총자산			4. 상시종업원수																																																																																																																																																		
	6. 성 명			7. 생년월일																																																																																																																																																		
	8. 업체주소						9. 전화번호 (휴대폰)																																																																																																																																															
GS인증제품의 주요내용	10. 제품명		11. GS인증 획득일		12. 직접구매 가능여부		13. A/S 계획		14. 납품 실적		15. 조달청 단가계약여부																																																																																																																																											
					"별첨" (서식2)		"별첨" (서식3)		"별첨" (서식4)																																																																																																																																													
16. 우선구매조치 대상기관명					17. 우선구매조치대상 기관 담당자 (연락처)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p>																																																																																																																																																						
첨부서류												수 수 료																																																																																																																																										
1. GS인증서 사본 3부 2.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직접구매 가능성 상세 설명서 3부 3.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A/S 계획서 3부 4.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납품실적서 3부												없 음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직접구매 가능성 상세설명서**

위와 같이 직접구매가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업유형 및 내용과 중소기업의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이 조달 등록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기재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A/S 계획서**

위와 같이 A/S를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 중소기업의 우선구매요청 GS인증제품의 하자보수계획, 유지보수계획, 콜센터 지원계획 등을 기재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p>[별지 제4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납품실적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공공부문</td> <td style="height: 10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민간부문</td> <td style="height: 100px;"></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위와 같이 납품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p>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p> <p>※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SI업체를 통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발주기관명, 원도급자명, 용역계약기간, 납품단가를 기재</p> <p>※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SI업체를 통한 하도급이 아닌 경우에는 발주기관명, 원도급자명, 용역계약기간, 납품단가를 기재</p> <p>※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필요할 경우 인증 이전 동일 제품의 납품실적도 기재할 수 있음</p>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납품실적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p>위와 같이 납품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p>		<p>[별지 제5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검토의견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① 회사명</td> <td style="height: 40px;"></td> </tr> <tr> <td rowspan="2">② 일반사항</td> <td>품명</td> </tr> <tr> <td>분야</td> </tr> <tr> <td rowspan="2">③ 평가</td> <td>구매 적합성</td> </tr> <tr> <td>A/S 지원 체계</td> </tr> <tr> <td>④ 종합검토의견</td> <td style="height: 80px;"></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위와 같이 우선구매요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p>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p>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검토의견서		① 회사명		② 일반사항	품명	분야	③ 평가	구매 적합성	A/S 지원 체계	④ 종합검토의견		<p>위와 같이 우선구매요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p>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납품실적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p>위와 같이 납품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p>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검토의견서																							
① 회사명																							
② 일반사항	품명																						
	분야																						
③ 평가	구매 적합성																						
	A/S 지원 체계																						
④ 종합검토의견																							
<p>위와 같이 우선구매요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p>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우선구매 조치결과(구매승인)			
1. 기관명			
2. 담당자명		4. 전화번호	
3. 전자우편		5. 모사전송번호	
6. 우선구매 요청 기업		7. 우선구매 요청 제품	
8. 우선구매 조치내용			
계약방식			
수량			
금액			
위와 같이 우선구매요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년    월    일 <span style="float: right;">기관장                      (인)</span>			
<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우선구매 조치결과(구매거부)			
1. 기관명			
2. 담당자명		4. 전화번호	
3. 전자우편		5. 모사전송번호	
6. 우선구매 요청 기업		7. 우선구매 요청 제품	
8.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우선구매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span style="float: right;">기관장                      (인)</span>			
<b>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b>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 8. 구매가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 ⑤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 정 2016. 1.1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호</p> <p>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지정시험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p> <p>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 267-2)</p> <p>나. 대표자 : 임차식</p> <p>다.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는 소프트웨어</p> <p>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일 : 2016. 1. 18</p> <p>2. 행정사항 : 재검토기한</p> <p>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6-1호, 2016.1.18.&gt;</p> <p><b>제1조(시행일)</b>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 ⑥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p style="text-align: center;">제 정 2015.12.31.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113호</p> <p><b>제1조(목적)</b>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 실시에 필요한 평가시험의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b>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시험 대상'이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 대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b>제3조(사전협의)</b>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을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경우 사전공개 전에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시험 실시 여부 및 수행주체</li> <li>2. 소프트웨어 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li> <li>3. 기능평가 또는 성능평가 등 평가방식</li> <li>4. 평가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이하 "시험비용"이라 한다)</li> <li>5. 제안요청서의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li> </ol> <p><b>제4조(평가시험 실시의 결정)</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기준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이하 "중전 시험결과"라 한다)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p>	<p>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전 시험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의 정보공개를 확인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중전 시험결과를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p> <p>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전 시험결과 활용 여부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p> <p><b>제5조(평가시험의 수행주체)</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3에 따라 평가시험 의뢰서를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평가시험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직접 수립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p> <p><b>제6조(평가기준의 수립)</b>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이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2의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등과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을 반영한 평가시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을 말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평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입찰공고 기간 이내에 제2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소프트웨어 공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b>제7조(평가시험의 참가)</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의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평가시험의 참가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p> <p><b>제8조(시험비용)</b> ① 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p>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p>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담비율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하는 시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별표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시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 <p><b>제9조(평가시험의 수행)</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제7조에 따라 평가시험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p> <p><b>제10조(평가시험 결과서의 교부)</b>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시험 결과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시험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평가시험 결과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시험 결과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할 수 있다.</p> <p><b>제11조(평가시험의 결과 반영)</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평가시험 결과서를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할 경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p> <p><b>제12조(정보 공개)</b>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결과의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명</li> <li>2. 소프트웨어품목</li> <li>3. 평가시험 환경</li> <li>4. 평가항목</li> </ol>	<p><b>제13조(종전 시험결과 활용 및 의견 수렴)</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있는지의 여부</li> <li>2. 종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평가시험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중 평가시험을 다시 실시하려는자가 있는지의 여부</li> </ol>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시험 실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p> <p><b>제14조(지정시험기관의 역할 등)</b> ①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시험 수행</li> <li>2.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성능 평가모델 개발</li> <li>3. 기타 평가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li> </ol>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시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시험 신청 및 수행 현황</li> <li>2. 평가시험 결과</li> <li>3. 기타 지정시험기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자료</li> </ol> <p><b>제15조(재검토기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별표 제1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비용 산출 기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비용 산출 기준**

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비용은 인건비, 직접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p><b>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비용</b> = 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p>
---

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비용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별	적 용 범 위	산 출 기 준
▪ 인건비	○ 시험 기간과 투입 인력에 따른 비용	시험기간(일) ×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 직접경비	○ 시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 (장비비, 여비 등)	
▪ 제 경 비	○ 인건비 및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시험 및 인증 업무의 행정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 행정업무 : 평가시험에 필요한 신청 접수, 상담, 계약, 평가시험팀 구성, 평가시험 계획서 작성 및 설명회 개최, 평가시험 결과서 발급, 사후관리 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사업 내용	공고명	공고번호	사업금액
	평가시험 분야	사업기간	. . . . .부터 . . . . .까지

업체 정보	업체명(대표자)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당사는 「공고명」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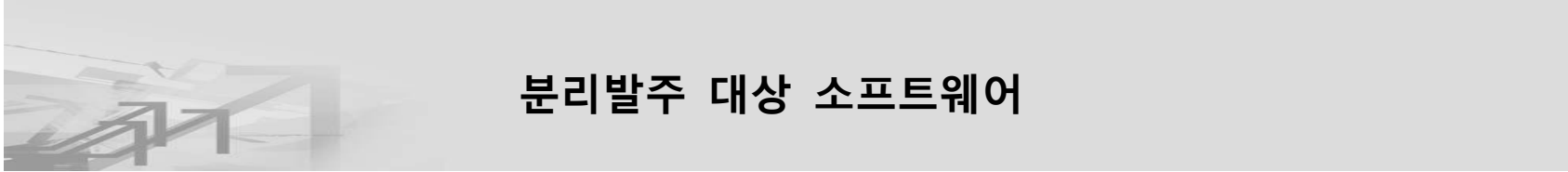
대표자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190mm×268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서					
<b>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서</b>					
의뢰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평가 시험 결과	입찰공고명				
	평가시험 분야	사업 기간	. . . . .부터 . . . . .까지		
	신청일자				
	평가시험 기간	. . . . .부터 . . . . .까지			
	평가시험 결과	세부 평가시험 결과서 참조			
년 월 일					
<b>지정시험기관의 장</b>			<b>직인</b>		
<b>지정시험기관명</b> 주소 전화 : , Fax :			결과서 번호: 페이지( )/(총 )		
첨부서류 - 세부 평가시험 결과서 1부.					
190mm×268mm[백상지 80g/㎡]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⑦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제정</td> <td style="width: 15%;">2007.11.19.</td> <td style="width: 30%;">정보통신부 고시</td> <td style="width: 45%;">제2007-4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09. 6.22.</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9-120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0. 2.26.</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0-54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3. 2.22.</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41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3. 9. 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43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3.12.18.</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84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4. 11.7.</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4-80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부개정</td> <td>2015.12.28.</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5-107호</td> </tr> </table> <p><b>제1조(목적)</b>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세부적인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분리발주 대상 사업)</b>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사업 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p><b>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b>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li> <li>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li> <li>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li> <li>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li> <li>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p>	제정	2007.11.19.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2호	일부개정	2009. 6.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20호	일부개정	2010. 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	일부개정	2013. 2.2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41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3호	일부개정	2013.12.1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4호	일부개정	2014. 11.7.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0호	전부개정	2015.12.2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7호	<p>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p> <p>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p> <p><b>제4조(분리발주의 제외)</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p> <p><b>제5조(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b>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p> <p><b>제6조(재검토기한)</b> 미래창조과학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제정	2007.11.19.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2호																														
일부개정	2009. 6.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20호																														
일부개정	2010. 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																														
일부개정	2013. 2.2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41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3호																														
일부개정	2013.12.1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4호																														
일부개정	2014. 11.7.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0호																														
전부개정	2015.12.2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7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p><b>부칙</b> &lt;제2015-107호, 2015.12.28&gt;</p> <p><b>제1조(시행일)</b>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적용례)</b>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p>	<p>[별지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b></p> <table border="1" data-bbox="973 365 1781 1239"> <thead> <tr> <th data-bbox="973 365 1045 422">번호</th> <th data-bbox="1045 365 1240 422">소프트웨어 품목</th> <th data-bbox="1240 365 1323 422">수량</th> <th data-bbox="1323 365 1696 422">제외사유</th> <th data-bbox="1696 365 1781 422">비고</th> </tr> </thead> <tbody> <tr><td>1</td><td></td><td></td><td></td><td></td></tr> <tr><td>2</td><td></td><td></td><td></td><td></td></tr> <tr><td>3</td><td></td><td></td><td></td><td></td></tr> <tr><td>4</td><td></td><td></td><td></td><td></td></tr> <tr><td>5</td><td></td><td></td><td></td><td></td></tr> <tr><td>6</td><td></td><td></td><td></td><td></td></tr> <tr><td>7</td><td></td><td></td><td></td><td></td></tr> <tr><td>8</td><td></td><td></td><td></td><td></td></tr> <tr><td>9</td><td></td><td></td><td></td><td></td></tr> <tr><td>10</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제외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제외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⑧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제정</td> <td style="width: 15%;">2006.10.13.</td> <td style="width: 20%;">정보통신부 고시</td> <td style="width: 10%;">제2006-39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09. 8.21.</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9-193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0. 2.26.</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0-55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타법개정</td> <td>2012. 3.26.</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2-67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2.11.30.</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2-288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3. 9. 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44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4. 2.14.</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4-16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5. 6.17.</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5-40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6. 6.24.</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6-62호</td> </tr> </table> <p><b>제1조(목적)</b>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세부적인 요구사항 분석·제시, 공급자 선정·관리, 사업 관리 및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적용범위)</b> 이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p> <p><b>제3조(정의)</b>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급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li> <li>2. "발주자"라 함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li> </ol> <p><b>제4조(예산편성)</b>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및 세부내용 작성표(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예산 및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예산편성 및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제정	2006.10.13.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9호	일부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일부개정	2010. 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5호	타법개정	2012. 3.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일부개정	2012.11.3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8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	일부개정	2014. 2.1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일부개정	2015. 6.17.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0호	일부개정	2016. 6.2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62호	<p>③ 발주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외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그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b>제5조(발주준비)</b> ①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발주·계약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발주자는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거나 광범위·복잡한 경우 등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④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p> <p><b>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b>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p>
제정	2006.10.13.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9호																																		
일부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일부개정	2010. 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5호																																		
타법개정	2012. 3.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일부개정	2012.11.3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8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																																		
일부개정	2014. 2.1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일부개정	2015. 6.17.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0호																																		
일부개정	2016. 6.2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62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p>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p> <p><b>제7조(제안요청서 준비)</b> ① 발주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발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8조(계약 및 변경)</b> ①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b>제9조(공급자관리)</b>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b>제10조(사업관리)</b> ①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적용기준에 따라 수립한 상세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기획 및 예산편성,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단계별 절차를 수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승인 등을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한다.</p> <p><b>제11조(합동검토)</b> 발주자는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p> <p><b>제12조(감리)</b>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p>	<p>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 또는 외부감리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p> <p><b>제13조(인수 및 종료)</b>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p> <p><b>제14조(성과관리)</b> 발주자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p> <p><b>제15조(세부사항)</b>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p> <p><b>제16조(재검토기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6-62호, 2016.6.24&gt;</p> <p>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표 1]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1. 소프트웨어사업 발주단계별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b>발주 단계</b>	<b>수행활동</b>	<b>발주 단계</b>	<b>수행활동</b>	
1. 사업 추진 준비단계	1.1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		품질 요구사항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계약사항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3.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3.1 내·외부 환경 분석	5.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3.2 내·외부 현황 분석		내부 업무현황 분석	5.2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내부 기술현황 분석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5.4 입찰공고
	3.3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3.4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토 및 보완	6.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6.1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기능 요구사항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성능 요구사항	6.5 인수 및 사업종료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세부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분석·적용 가이드'를 참고			
데이터 요구사항	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류기준			
테스트 요구사항	<b>분류기준</b>		<b>세부 내용</b>	
보안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분류기준	세부 내용	분류기준	세부 내용												
기능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li> <li>-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li> </ul>												
성능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li> </ul>	제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li> </ul>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li> <li>-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li> </ul>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li> </ul>												
데이터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li> </ul>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li> <li>-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li> </ul>												
테스트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li> </ul>	○ 단, 요구사항 분류기준은 개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보안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li> </ul>	3.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작성기준													
품질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li> </ul>	작성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작성항목</th> <th>설명</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요구사항 분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성능 / 인터페이스 / 데이터 / 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술</li> </ul> </td> <td>필수 작성</td> </tr> <tr> <td>요구사항 고유번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검수 시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요구사항별 고유번호를 생성</li> <li>• 요구사항 분류(또는 약어)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현가능</li> </ul> </td> <td>필수 작성</td> </tr> <tr> <td>요구사항 명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사항의 명칭을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작성함</li> <li>• 단, 기능 요구사항은 상위기능과 하위기능을 조합하여 계층화 될 수 있도록 기술</li> </ul> </td> <td>필수 작성</td> </tr> </tbody> </table>	작성항목	설명	비고	요구사항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성능 / 인터페이스 / 데이터 / 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술</li> </ul>	필수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검수 시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요구사항별 고유번호를 생성</li> <li>• 요구사항 분류(또는 약어)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현가능</li> </ul>	필수 작성	요구사항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사항의 명칭을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작성함</li> <li>• 단, 기능 요구사항은 상위기능과 하위기능을 조합하여 계층화 될 수 있도록 기술</li> </ul>	필수 작성
작성항목	설명	비고													
요구사항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성능 / 인터페이스 / 데이터 / 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술</li> </ul>	필수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검수 시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요구사항별 고유번호를 생성</li> <li>• 요구사항 분류(또는 약어)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현가능</li> </ul>	필수 작성													
요구사항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사항의 명칭을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작성함</li> <li>• 단, 기능 요구사항은 상위기능과 하위기능을 조합하여 계층화 될 수 있도록 기술</li> </ul>	필수 작성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b>작성항목</b>	<b>설명</b>	<b>비고</b>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b>요구사항 상세설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기 작성함</li> </ul>		<b>구분</b>	<b>방법 및 절차</b>				
	<b>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사항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li> </ul>			<b>대상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li> <li>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li> </ul>		
	<b>세부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모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작성하며, 이해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여 표현도 가능</li> <li>단,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전체시스템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기능구조를 도출하여, 세부기능별로 작성하여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li> </ul>	<b>필수 작성</b>					
<b>산출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요구사항의 수행을 통해 사업완료 후 어떠한 산출물이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작성함</li> <li>단, 요구사항에 따라 타 요구사항의 산출정보와 통합되어 별도의 산출물 없을 수 있으며, 비기능적 요구사항의 경우 문서, 보고서, 화면의 형태로 산출될 수도 있음</li> </ul>	해당 시	<b>방법 및 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자는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i> <li>'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li> <li>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li> <li>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li> <li>투입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li> <li>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투입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다.</li> </ol> </li> </ul>				
<b>관련 요구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타 요구사항의 고유번호를 기입</li> <li>단,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관리가 요구됨</li> </ul>	해당 시						
<b>요구사항 출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요구사항이 도출된 출처(사업계획서, 담당자/부서, 내부규정 등)를 기입하여 향후 요구사항 변경이나 수정, 삭제 필요 시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정보 필요 시 활용하도록 함</li> </ul>	필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요구사항 출처는 요구사항 변경·관리 용도로 사용하며, 제안요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음</li> <li>세부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분석·적용 가이드'를 참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계산식</th> </tr> </thead> <tbody> <tr> <td>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td> <td>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td> </tr> </tbody> </table>		항목	계산식
항목	계산식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② 1인 생산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규모(FP)</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생산성(FP/MM)</td> <td rowspan="5" style="width: 5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 ~ 1,999</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 ~ 2,999</td>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1인 총 투입기간</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 투입 인력 수</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 전체 개발기간</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월</td> </tr> </table> <p>◦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를 작성하고 각 위원별 산정결과를 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p> <p>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p> <p>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p> <p>③ 조달청 (<a href="http://www.g2b.go.kr">www.g2b.go.kr</a>)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a href="http://www.spir.kr">www.spir.kr</a>)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p> <p>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p> <p>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p> <p>◦ 발주자는 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결정한다.</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④ 투입 인력 수	-		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개월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요구사항 분류</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요구사항 고유번호</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예시 : 기능요구사항 - 00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요구사항 명칭</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요구사항 상세 설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의</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부 내용</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출정보</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 요구사항</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요구사항 출처</td> <td colspan="2"></td> </tr> </table> <p>*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p>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예시 : 기능요구사항 - 00X)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④ 투입 인력 수	-		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개월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예시 : 기능요구사항 - 00X)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사업명		추정 사업기간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p>「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원 _____(서명)</p>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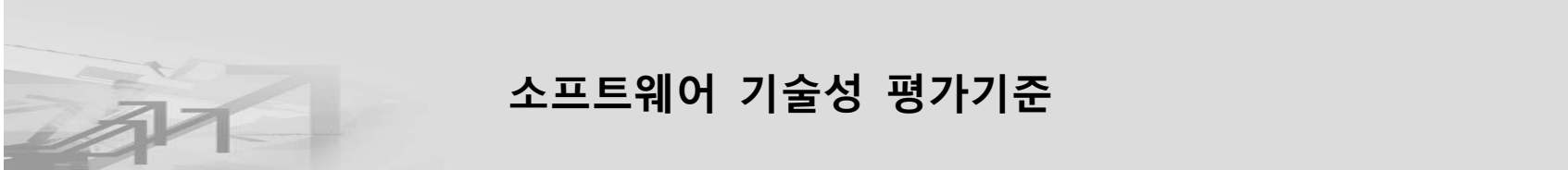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추정 사업기간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③ 유사사업 자료		
④ 기타 특이사항		
⑤ 종합의견		
<p>「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위원장 _____(서명)</p>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p data-bbox="137 201 318 229">[별지 제4호서식]</p> <p data-bbox="517 239 583 268">서약서</p> <div data-bbox="156 278 946 115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p data-bbox="508 401 593 429" style="text-align: center;"><b>서약서</b></p><p data-bbox="166 544 935 668">본인은 0000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00000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00000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p><p data-bbox="633 761 803 789"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p data-bbox="517 832 819 925">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p><p data-bbox="440 1003 664 1032" style="text-align: center;"><b>발주기관의 장</b> 귀하</p></div> <p data-bbox="137 1182 738 1210">※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p>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9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제정</td> <td style="width: 15%;">1997. 2.12.</td> <td style="width: 25%;">정보통신부 고시</td> <td style="width: 50%;">제1997 - 9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1999. 8. 3.</td> <td>정보통신부 고시</td> <td>제1999 -6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00. 10.5.</td> <td>정보통신부 고시</td> <td>제2000 -73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부개정</td> <td>2004. 1.28.</td> <td>정보통신부 고시</td> <td>제2004 - 4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06. 4.24.</td> <td>정보통신부 고시</td> <td>제2006 -16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07.12.31.</td> <td>정보통신부 고시</td> <td>제2007 -51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09. 8.21.</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9-193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0. 2.26.</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0 -53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1. 7.22.</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1-148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3. 9. 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45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4. 4.10.</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4 -29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5. 11.9.</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5 -88호</td> </tr> </table> <p><b>제1조(목적)</b>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적용범위)</b>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li> <li>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li> <li>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li> <li>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li> </ol> <p><b>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b>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p>	제정	1997. 2.12.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7 - 9호	일부개정	1999. 8. 3.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 -62호	일부개정	2000. 10.5.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 -73호	전부개정	2004. 1.28.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 - 4호	일부개정	2006. 4.2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16호	일부개정	2007.12.3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 -51호	일부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일부개정	2010. 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53호	일부개정	2011. 7.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5호	일부개정	2014. 4.1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29호	일부개정	2015. 11.9.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88호	<p>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p> <p><b>제4조(평가방법 등)</b>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 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p> <p>② 국가계약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p> <p>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배점한도 이외에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li> <li>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실하는 경우</li> </ol> <p>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배점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1점 이내</li> <li>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따라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2점 이내</li> </ol> <p><b>제5조(평가위원회)</b>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제정	1997. 2.12.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7 - 9호																																														
일부개정	1999. 8. 3.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 -62호																																														
일부개정	2000. 10.5.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 -73호																																														
전부개정	2004. 1.28.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 - 4호																																														
일부개정	2006. 4.2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16호																																														
일부개정	2007.12.3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 -51호																																														
일부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일부개정	2010. 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53호																																														
일부개정	2011. 7.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5호																																														
일부개정	2014. 4.1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29호																																														
일부개정	2015. 11.9.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88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p> <p>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p> <p>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⑦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b>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b>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7조(기타사항)</b> ①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매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p> <p>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p> <p><b>제8조(재검토기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5-88호, 2015.11.9&gt;</p> <p>이 기준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동 기준 시</p>	<p>행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p>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성능 및 품질	데이터 요구 사항	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예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 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절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기능 요구 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 계약 적정성	을 부여한다. 또한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li> <li>○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li> <li>○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li> <li>○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li> </ul>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text{평가부문별 점수} = \sum_{k=1}^n \text{평가항목 배점}_k \times \left( \frac{\text{평가항목의 취득 등급 값}_k}{\text{평가항목의 등급 최고 값}_k} \right)$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생협력 및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li> </ul>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기능성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기능성	기능 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 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 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 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	기능 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 조 정 가능성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효율성	이식성	운 영 절 차 조 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운 영 환 경 적 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설 치 제 거 용 이 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 위 호 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유지 보수성	반 응 시 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자 원 사 용 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조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처 리 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문 제 진 단/ 해 결 지 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환 경 설 정 변 경 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직접 생산 여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백업/복구 용이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운영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li> <li>○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li> <li>○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li> <li>○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평가부문별 점수} = \sum_{k=1}^n \text{평가항목 배점}_k \times \left( \frac{\text{평가항목의 취득 등급 값}_k}{\text{평가항목의 등급 최고 값}_k} \right)</math> </div> </li> </ul>		
	장애 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업체 지원	유지 지원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li> </ul>		
	교육 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3항 관련)

###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5항 관련)

### 평가의견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평 가 의 견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기준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의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기준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의견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제5조제6항 관련)			
<b>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b>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small>(발주기관에서 기입)</small>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small>(충족/부분/미충족)</small>	
점검내용		비 고	
		<small>(관련근거 등)</small>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신청인 상호 :</span> <span>년 월 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5px;"> <span>대표 :</span> <span>(인)</span> </div>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 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제정</td> <td style="width: 15%;">2008.12.19.</td> <td style="width: 20%;">지식경제부 고시</td> <td style="width: 55%;">제2008-199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타법개정</td> <td>2009. 8.21.</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9-193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1.12.14.</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1-26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3. 9. 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46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3.12.31.</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200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부개정</td> <td>2015.12.31.</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5-114호</td> </tr> </table> <p><b>제1조(목적)</b>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적용범위 등)</b> ①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4조의4제1항에서 "단순 물품"이라 함은 하드웨어·설비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③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하드웨어·설비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유지보수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와 외부자문은 단순 물품으로 본다.</p> <p><b>제3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b>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제출 요청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p> <p><b>제4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b>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p>	제정	2008.12.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9호	타법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일부개정	2011.12.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2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6호	일부개정	2013.12.3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전부개정	2015.12.3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4호	<p>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유 없이 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b>제5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준수여부 및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b>제6조(재판단의 요청)</b> ① 계약상대자는 신청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이 거절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p>
제정	2008.12.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9호																						
타법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일부개정	2011.12.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2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6호																						
일부개정	2013.12.3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전부개정	2015.12.3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4호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p> <p><b>제7조(하도급계약 변경승인신청)</b>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재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2. 승인받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li> </ol>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p> <p><b>제8조(하도급 관리 등)</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등과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li> </ol>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승인 받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하도급계약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20조의3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p> <p>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p>	<p><b>제9조(세부사항)</b>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p> <p><b>제10조(재검토기한)</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5-114호, 2015.12.31&gt;</p> <p><b>제1조(시행일)</b> 이 지침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b>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b>제3조(하도급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p>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별표]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I.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제한 중인 경우</li> </ul> 감점 (-25점)

#### II.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00%이상</td> <td>99 ~ 80%</td> <td>79 ~ 60%</td> <td>59 ~ 50%</td> <td>50%미만</td> </tr> <tr> <td>30점</td> <td>28점</td> <td>26점</td> <td>25 ~ 16점</td> <td>15점</td> </tr> </table>	100%이상	99 ~ 80%	79 ~ 60%	59 ~ 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 ~ 16점	15점
	100%이상	99 ~ 80%	79 ~ 60%	59 ~ 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 ~ 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70%이상</td> <td>69 ~ 60%</td> <td>59 ~ 50%</td> <td>49 ~ 40%</td> <td>40%미만</td> </tr> <tr> <td>30점</td> <td>28점</td> <td>26점</td> <td>25 ~ 16점</td> <td>15점</td> </tr> </table>	70%이상	69 ~ 60%	59 ~ 50%	49 ~ 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 ~ 16점	15점
		70%이상	69 ~ 60%	59 ~ 50%	49 ~ 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 ~ 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li> <li>2.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li> <li>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li> </ol>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 III.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td> <td>                     ㉡, ㉢, ㉣ 전부 일치                 </td> <td>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td> </tr> <tr> <td>0점</td> <td>30점</td> <td>15점</td> </tr> </table>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0점	30점	15점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0점	30점	15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95%이상</td> <td>94 ~ 90%</td> <td>89 ~ 85%</td> <td>84 ~ 80%</td> </tr> <tr> <td>30점</td> <td>25점</td> <td>20점</td> <td>15점</td> </tr> </table>	95%이상	94 ~ 90%	89 ~ 85%	84 ~ 80%	30점	25점	20점
95%이상	94 ~ 90%	89 ~ 85%	84 ~ 80%					
30점	25점	20점	1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IV.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b>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b>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①	(가점사유)
				가점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b>합계</b>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b>합계</b>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b>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colspan="7">사업명</td> </tr> <tr> <td colspan="2">계약금액(C)</td> <td colspan="2">원사업기간</td> <td colspan="3">년 월 일 ~ 년 월 일</td> </tr> <tr> <td rowspan="2">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td> <td colspan="2">상호</td> <td colspan="2"></td> <td colspan="2">대표자</td> </tr> <tr> <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 <td colspan="2"></td> <td colspan="2">소재지</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하도급 예정 계획</b>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th>번호</th> <th>수급인</th> <th>하수급인 상호</th> <th>하도급 계약명</th> <th>하도급 계약기간</th> <th>하도급 예정액(A)</th> <th>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td> <td>· · · · ~ · · · ·</td> <td>원</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 · · · ~ · · · ·</td> <td>원</td> <td>%</td> </tr> <tr> <td>3</td> <td></td> <td></td> <td></td> <td>· · · · ~ · · · ·</td> <td>원</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 · · · ~ · · · ·</td> <td>원</td> <td>%</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b>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th>번호</th> <th>구분 (HW·설비·상용SW)</th> <th>물품명</th> <th>제조사 (개발사)</th> <th>수량</th> <th>구매시기</th> <th>물품 구매 예정액(B)</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원</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원</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원</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p>							사업명							계약금액(C)		원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 ·	원	%	2				· · · · ~ · · · ·	원	%	3				· · · · ~ · · · ·	원	%	합계				· · · · ~ · · · ·	원	%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b> </div> <p style="font-size: small;">-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p> <p style="font-size: small;">‘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b>발주기관의 장 귀하</b> </div>						
사업명																																																																																																							
계약금액(C)		원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 ·	원	%																																																																																																	
2				· · · · ~ · · · ·	원	%																																																																																																	
3				· · · · ~ · · · ·	원	%																																																																																																	
합계				· · · · ~ · · · ·	원	%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10%; font-size: small;">제출서류</td> <td style="font-size: small;">-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td> </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p>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297mm(백상지 80g/㎡)</p>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 번호		계약 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 기간	. . .부터	.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 일자		계약 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 기간	. . .부터	. . .	.까지
재하도 급 개요	계약명		승인 일자		계약 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 기간	. . .부터	.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 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 11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 정 2006. 11.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43호                      타법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타법개정 2012. 3.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67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7호                      일부개정 2016. 4.2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46호</p> <p><b>제1조(목적)</b>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b>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에 한한다.</p> <p><b>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b>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이하 "제안서 보상 대상자"라 한다)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p> <p><b>제4조(보상예산)</b>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규정한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p> <p><b>제5조(보상기준)</b>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p>	<p style="text-align: center;">를 지급</p> <p><b>제6조(공동입찰시의 제안서 보상)</b> 국가기관 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p> <p><b>제7조(보상통지)</b>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b>제8조(제안서 활용)</b>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b>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10조(재검토기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b>부칙</b> &lt;제2016-46호, 2016.4.20.&gt;</p> <p>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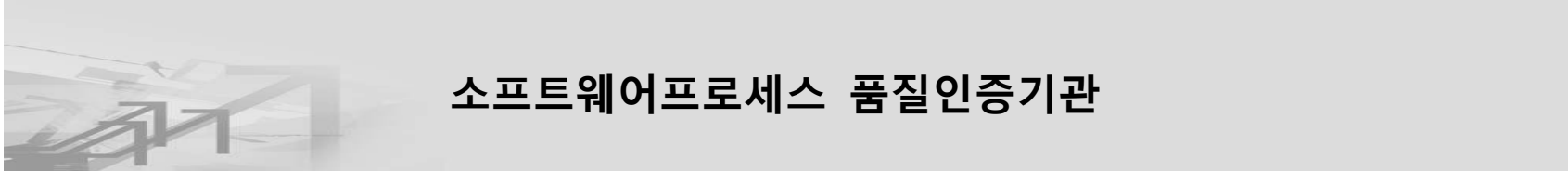


## 12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p style="text-align: center;">제 정 2012.11.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75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8호                      일부개정 2016. 4.2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45호</p> <p><b>「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분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한 "관리감독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각각 지정한다.</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6-45호, 2016.4.20.&gt;</p> <p><b>제1조(시행일)</b>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재검토기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 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p style="margin: 0;">제 정 2009. 1.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6호                      일부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70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9호</p> <p style="margin: 10px 0 0 0;"><b>제1조(목적)</b>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margin: 10px 0 0 0;"><b>제2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b>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2번지를 그 소재지로 한다.</p> <p style="margin: 10px 0 0 0;"><b>제3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b>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은 2009년 1월 15일로 한다.</p> <p style="margin: 20px 0 0 40px;"><b>부칙</b> &lt;제2013-149호, 2013.9.6&gt;</p> <p style="margin: 10px 0 0 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 1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right;">제정</td> <td style="width: 15%;">2008.10.16.</td> <td style="width: 25%;">지식경제부 고시</td> <td style="width: 50%;">제2008-145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td> <td>2013. 1.30.</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 -16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td> <td>2013. 9. 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50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td> <td>2015.12.28.</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5-109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용어의 정의)</b>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프로세스"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한다.</li> <li>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함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가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등급을 판정하는 행위를 말한다.</li> <li>3. "인증신청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소프트웨어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li> <li>4. "조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체제를 갖춘 기업 또는 그 하부조직 등을 말한다.</li> <li>5.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그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6.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li> <li>7. "품질활동 실적자료"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작성, 수집한 별표1의 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영역별 산출물과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li> </ol>	제정	2008.10.1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5호	일부개정	2013. 1.3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16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0호	일부개정	2015.12.2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9호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세부기준</b></p> <p><b>제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b> 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16조의4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b>제4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기준)</b>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이 제3조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등급을 판정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등급은 2개 등급(2등급, 3등급)으로 한다.</li> <li>2. 인증심사결과가 별표1의 영역1 내지 영역3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2등급으로 판정하고, 영역1 내지 영역5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3등급으로 판정한다.</li> </ol> <p>② 인증등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증등급 표기 시 주석(2등급 - 프로젝트 차원, 3등급 - 조직 차원)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다.</p> <p><b>제5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b> 영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세부절차</b></p> <p><b>제6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b>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를 심사받기 위하여 인증신청인은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p> <p><b>제7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b>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등급을 고려하여 인증심사원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역량수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인증신청인이 인증등급을 3등급으로 신청한 경우 인증심사원 심사결과 별표1의 영역1 내지 영역3만을 만족할 때에는 인증심의회는 제4조제2호에 따라 2등급 인증 부여를 심의</p>
제정	2008.10.1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5호														
일부개정	2013. 1.3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16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0호														
일부개정	2015.12.2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9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p>· 의결하고 품질인증심의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인증심의회는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인증심사결과를 포함한 인증등급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의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인증신청인의 인증부여 여부와 인증등급을 최종 판정하고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인증신청인은 인증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여부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발급)</b>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인의 프로세스가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p> <p>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p> <p><b>제8조의2(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변경)</b>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신청인이 법인(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서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b>제8조의3(인증 유효기간 연장)</b>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5호 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li> <li>2. 제2조제7호에 따른 품질활동 실적자료(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제출)</li> </ol> <p>② 인증기관은 제8조의3조제1항제2호의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최종 유효기간 연장을 판정한다. 단,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2년 단위로 최대 2회로 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b></p> <p><b>제9조(인증기관의 지정)</b> ① 법 제23조제2항, 영 제16조의3제1항,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인증</p>	<p>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인증심사업무규정, 시설 및 환경, 인증심사활동에 대한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li> <li>2. 규칙 별표4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관한 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li> <li>3. 신청기관이 별표3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제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고시한다.</li> </ol>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b>제10조(인증기관의 운영·관리)</b> 제9조에 의한 인증기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체계의 확립과 운영·관리를 위해 인증심사와 관련된 운영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li> <li>2.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li> <li>3.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결과 및 인증신청인의 변경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li> <li>4.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수행능력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li> </ol> <p><b>제11조(인증심의회 설치·운영)</b>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심의회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li> <li>2. 인증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li> <li>3. 인증심의위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인증신청인에 대한 인증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가목의 경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인증신청인의 임직원으로서 근무한 경우</li> <li>나. 인증신청인의 인증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li> </ul> </li> <li>4. 인증심의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사항</li> <li>나. 인증심사결과 및 인증등급에 관한 사항</li> </ul> </li> <li>5. 인증심의회 의결은 제3호의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인증심의위원 3인 이상 출석과</li> </ol>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p>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p> <p><b>제12조(인증심사원)</b> ①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인증심사원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한다.</p> <p>② 심사팀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은 선임심사원 중에서 선임한다.</p> <p>③ 인증심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사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경력 5년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심사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li> <li>2. 선임심사원은 심사원으로 인증심사활동 실적이 5회 이상이고 엔지니어링 경력 10년 이상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5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선임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li> </ol> <p>④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2년 이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li> <li>2.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심사 실적이 없는 경우</li> <li>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li> <li>4.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li> <li>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li> <li>6.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인증심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양성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원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b>제13조(재검토기한)</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5-109호, 2015.12.28&gt;</p> <p><b>제1조(시행일)</b>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경과조치)</b>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업 및 조직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3조(유효기간 연장)</b> 제8조의3(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인증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조직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p>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별표 1]			
<b>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b>			
영역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영역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b>평가항목</b>	<b>세부평가항목</b>	<b>평가항목</b>	<b>세부평가항목</b>
1.1 프로젝트 계획	1.1.1 프로젝트의 목표 및 범위를 결정한다.	2.3 설계	2.3.1 구조 설계를 수행한다.
	1.1.2 프로젝트에 적용할 생명주기와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2.3.2 상세 설계를 수행한다.
	1.1.3 공수와 비용을 산정한다.		2.3.3 테스트 계획을 수립한다.
	1.1.4 일정과 예산을 결정한다.	2.4 구현	2.4.1 소프트웨어 단위를 구현한다.
	1.1.5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2.4.2 단위 테스트를 수행한다.
	1.1.6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는다.		2.4.3 소프트웨어를 통합한다.
1.2 프로젝트 통제	1.2.1 프로젝트 계획 요소들을 점검한다.	2.5 테스트	2.5.1 통합 테스트를 수행한다.
	1.2.2 프로젝트의 진척사항을 검토한다.		2.5.2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한다.
	1.2.3 주요 단계별 산출물 검토를 수행한다.		2.5.3 인수를 지원한다.
	1.2.4 식별된 문제들을 분석한다.	영역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	
	1.2.5 시정조치 활동을 수행한다.	<b>평가항목</b>	<b>세부평가항목</b>
1.3 협력업체 관리	1.3.1 획득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한다.	3.1 품질보증	3.1.1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한다.
	1.3.2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3.1.2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1.3.3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3.1.3 품질보증 활동 결과를 관리한다.
	1.3.4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3.2 형상관리	3.2.1 형상 항목을 식별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1.3.5 제품 및 서비스를 검수한다.		3.2.2 형상 통제를 실시한다.
		3.3 측정 및 분석	3.2.3 형상관리 기록을 관리한다.
			3.2.4 형상 감사를 실시한다.
			3.3.1 측정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한다.
			3.3.2 측정을 실시한다.
			3.3.3 측정 결과를 분석한다.
			3.3.4 측정 분석 결과를 관리한다.
<b>평가항목</b>	<b>세부평가항목</b>		
2.1 고객 요구사항 관리	2.1.1 고객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2.1.2 고객 요구사항의 변경을 관리한다.		
	2.1.3 고객 요구사항과 산출물간 추적성을 유지한다.		
2.2 분석	2.2.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4.1 조직 프로세스 관리	4.1.1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2.2.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4.1.2 표준 생명주기 모델을 정의한다.
	2.2.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4.1.3 조직 프로세스 조정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4.1.4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를 확산한다.
	4.1.5 조직 프로세스 적용 상황을 확인한다.
	4.1.6 프로세스 관련 경험을 자산으로 축적한다.
4.2 기반구조 관리	4.2.1 조직 기반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4.2.2 조직 기반구조를 구축한다.
	4.2.3 조직 기반구조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4.3 구성원 교육	4.3.1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4.3.2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4.3.3 교육 및 훈련의 효과를 평가한다.

영역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5.1 정량적 프로세스 관리	5.1.1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 성과 목표를 정의한다.
	5.1.2 조직 프로세스 성과 베이스라인을 정의한다.
	5.1.3 조직 프로세스 성과 모델을 정의한다.
	5.1.4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성과 목표를 정의한다.
	5.1.5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5.1.6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성과를 확인한다.
5.2 문제해결	5.2.1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5.2.2 해결할 문제를 선정한다.
	5.2.3 선정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정의한다.
	5.2.4 해결방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5.2.5 문제 해결방안의 성과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5.3 프로세스 개선관리	5.3.1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 및 목표를 식별한다.
	5.3.2 조직 프로세스의 강점 및 약점을 평가한다.
	5.3.3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5.3.4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5.3.5 프로세스 개선 활동의 성과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별표 2]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는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로 구성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 \text{신청관리비} + \text{인증심사비} + \text{직접경비}$$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별	적용 범위												
▪ 신청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인증신청인에게 일괄 적용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li> <li>※ 행정업무 :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증신청 접수, 인증상담, 심사 계약, 심사팀 구성, 심사계획서 작성 및 발송, 인증심의회 소집,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li> </ul>												
▪ 인증심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심사원의 참여인원수, 일일노임단가, 심사일수 등에 따라 산정</li> <li>&lt;등급별 심사 최소 참여인력(예)&gt;</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선임심사원(명)</td> <td>1</td> <td>1</td> </tr> <tr> <td>심사원(명)</td> <td>2</td> <td>3</td> </tr> <tr> <td>계</td> <td>3</td> <td>4</td> </tr> </tbody> </table>	구분	2등급	3등급	선임심사원(명)	1	1	심사원(명)	2	3	계	3	4
구분	2등급	3등급											
선임심사원(명)	1	1											
심사원(명)	2	3											
계	3	4											
▪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신청인의 특성(심사현장의 위치 등)과 인증심사팀 특성(원거리 거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심사보고서 인쇄비 등 심사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li> </ul>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별표 3]				<table border="1"> <tr> <td></td> <td></td> <td>·인증자료의 분석 및 관리·보고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인증고객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위탁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인증심사원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인증심사·심의 및 컨설팅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고객만족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2">소속 :</td> <td colspan="2">직위 :</td> <td colspan="2">성명 : (서명)</td> </tr> </table>						·인증자료의 분석 및 관리·보고에 관한 사항					·인증고객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원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심의 및 컨설팅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인증자료의 분석 및 관리·보고에 관한 사항																																														
		·인증고객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원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심의 및 컨설팅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b>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b>				<p>※ 인증기관 지정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지정심사기준의 모든 세부항목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임</p>																																												
<b>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 기준표</b>																																																
항 목	세 부 항 목	적합	부적합																																													
1. 지정신청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2.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경영관리, 재정관리, 조직관리, 인증업무 추진계획																																															
3.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 요건	가. 조직	·인증조직체계(행정, 인증심사, 성과 관리)의 설치																																														
		·인증심의조직(인증심의회) 설치																																														
	나. 인력	·인증심사원 5명 이상 확보																																														
		·인증심사원의 전문능력 보유																																														
	다. 운영 절차	·인증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인증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증표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불만,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인증 신청 기업 현황	법인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인증 심사 정보	주 소	□□□-□□□		
	심사대상 조직명			
	심사대상 사업명			
	인증신청 등급			
	참여인증 심사원			
	인증심사 기간	사전 심사	현장 심사	~
인증심사등급				
인증심사항목				
인증심사내용			결과	인증심사원
인증심사 결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불일치 사항	
인증심사원	제시 의견
상기와 같이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불 일 서 류   별표1의 세부평가항목별 인증심사결과 및 등급결정표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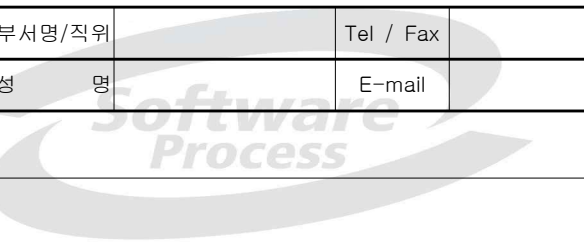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의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의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인증 신청 기업 현황	법인명	(한글)			대표자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인증 심사 정보	주 소	□□□-□□□							
		심사대상 조직명				심사대상 사업명			
인증 심사 정보	인증신청 등급								
	참여인증 심사원								
인증 심사 정보	인증심사 기간	사전 심사				현장 심사	~		
	인증심사 등급								
인증 심사 정보	인증심사 위원								
	인증심 의 일								
인증심의 결과									
인증심의등급									
인증심의위원장									
인증심의위원 의견									

상기와 같이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사항 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b>인증심의위원장</b> (인)									
인증심의위원			(인) 인증심의위원			(인)			
인증심의위원			(인) 인증심의위원			(인)			
붙 임 서 류		인증심의회 회의록							
210mm×297mm(신문용지 54g/m <sup>2</sup> (재활용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이의 신청 기업 현황	법인명	(한글)	대표자	(한글)		이의 신청 사유	신청요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 소	□□□-□□□						
	담당자	부서명/직위		Tel / Fax				
성 명			E-mail					
인증 심사 정보	심사대상조 직명	Software Process						
	심사대상사 업명							
	인 증 신 청 일	년 월 일						
	인 증 기 관 명							
	사 전 심 사 일	년 월 일						
	현장 심사	문서심 사	년 월 일 ~		년 월 일			
		면접심 사	년 월 일 ~		년 월 일			
인 증 심 의 일	년 월 일							
인 증 결 과								
					<p>상기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b></p>			
제 출 서 류		이의 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b>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b>						접수번호	
변경 신청 기업 현황	법인명	(한글)	대표자		(한글)	년 월 일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 소	□□□-□□□					
	담당 자	부서명/직위			Tel / Fax		
성 명				E-mail			
인증 정보	대상 조직명						
	인 증 번 호						
	인 증 등 급						
	인 증 기 간						
<b>변경 신청 내용</b>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상기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_\_\_\_\_ (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붙임자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 1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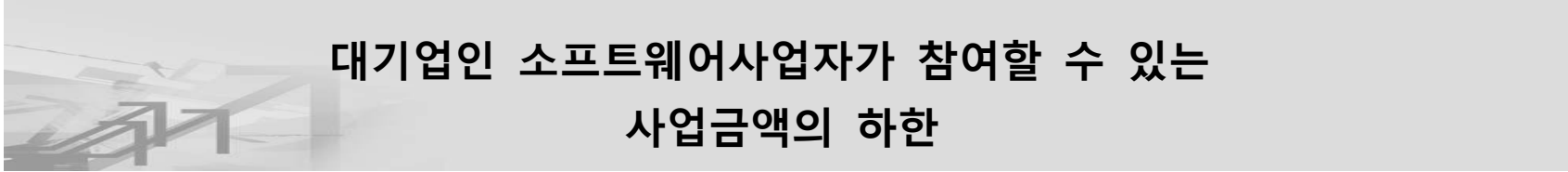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제정</td> <td style="width: 15%;">1996. 7. 2.</td> <td style="width: 20%;">정보통신부 고시</td> <td style="width: 10%;">제1996 -56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00. 10.5.</td> <td>정보통신부 고시</td> <td>제2000 -72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04. 3.27.</td> <td>정보통신부 고시</td> <td>제2004 -18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08.12.19.</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8-201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부개정</td> <td>2008.12.24.</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8-209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타법개정</td> <td>2009. 8.21.</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9-193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타법개정</td> <td>2012. 3.2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2 -67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3. 2. 8.</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 -33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개정</td> <td>2013. 9. 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51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용어의 정의)</b>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li> <li>2. "신고업무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정보 및 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li> <li>3.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4. "종합관리체계"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li> <li>5. "발주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li> <li>6.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실적, 계약변경실적, 사업완료실적을 포함하여 말한다.</li> </ol>	제정	1996. 7. 2.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6 -56호	일부개정	2000. 10.5.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 -72호	일부개정	2004. 3.2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 -18호	일부개정	2008.12.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1호	전부개정	2008.12.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9호	타법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타법개정	2012. 3.2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2 -67호	일부개정	2013. 2. 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33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1호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제2장 수행기관의 지정 및 해지</b></p> <p><b>제3조(신고업무 수행기관의 지정)</b>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은 법 제26조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한다.</p> <p><b>제4조(수행기관의 업무)</b>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이하 "사업자신고"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사업실적 신고(이하 "실적신고"라 한다)의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p> <p>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신고자,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확인서 발급 후 허위 신고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이 요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행기관의 장이 운영체적으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한다.</p> <p><b>제5조(수행기관의 해지)</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li> <li>2. 수행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li> <li>3.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b></p> <p><b>제6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b>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li> <li>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li> <li>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li> <li>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li> </ol>
제정	1996. 7. 2.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6 -56호																																		
일부개정	2000. 10.5.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 -72호																																		
일부개정	2004. 3.2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 -18호																																		
일부개정	2008.12.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1호																																		
전부개정	2008.12.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9호																																		
타법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타법개정	2012. 3.2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2 -67호																																		
일부개정	2013. 2. 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33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1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p><b>제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b> ① 사업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이하 "사업자신고서"라 한다)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자신고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24조의2제2항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b>제8조(사업자의 변경신고)</b>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사업자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신고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기 발급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이하"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b>제9조(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신고)</b> ① 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신고 내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수행 실적신고서(이하"실적신고서"라 한다)의 수행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다.</p> <p>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실적의 신설 또는 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10조(신고확인서의 발급 등)</b>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을 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③ 수행기관의 장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근거가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p> <p><b>제11조(신고확인서의 효력)</b> ① 제10조제1항에 의해 발급된 신고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p> <p>② 단, 제1항에 의해 발급된 신고확인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 요령에 따라 신고확인서가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확인서</li> <li>2.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확인서</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신고</b></p>	<p><b>제12조(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의 신고)</b> ① 제7조제1항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는 계약체결(변경포함) 내지 계약 종료 후 실적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내지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실적 신고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신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p> <p><b>제13조(수행실적 확인서 발급)</b>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확인된 실적신고서를 근거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이하"실적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p> <p>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증빙 자료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실적신고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을 제외하고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정보의 이용과 관리</b></p> <p><b>제14조(종합관리체계의 이용)</b> ①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종합관리체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신고·수리</li> <li>2. 신고확인서 또는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및 관리</li> <li>3. 발주자 또는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 대한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li> </ol> <p><b>제15조(정보의 관리)</b> 수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및 수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관리체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수수료</b></p> <p><b>제16조(수수료)</b>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행정사항</b></p> <p><b>제17조(재검토기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p>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p>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3-151호, 2013.9.6&gt;</p> <p>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 1] 수수료(제16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신 청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신규)</td> </tr> <tr> <td>2.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변경)</td> </tr> <tr> <td>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재발급</td> </tr> <tr> <td>4.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신고</td> </tr> <tr> <td>5.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td> </tr> </tbody> </table>	신 청 내 용	1.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신규)	2.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변경)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재발급	4.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신고	5.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신 청 내 용							
1.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신규)							
2.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변경)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재발급							
4.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신고							
5.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16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제정</td> <td style="width: 15%;">2004. 3. 6.</td> <td style="width: 20%;">정보통신부 고시</td> <td style="width: 15%;">제2004 -11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06. 4.24.</td> <td>정보통신부 고시</td> <td>제2006 -15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07. 9.10.</td> <td>정보통신부 고시</td> <td>제2007 -33호</td> </tr> <tr> <td>전부개정</td> <td>2008.12.19.</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8-198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09. 8.19.</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9-170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09. 9. 1.</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9-198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1.12.30.</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1-299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2. 4.26.</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2 -87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3. 9. 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52호</td> </tr> <tr> <td>타법개정</td> <td>2013.12.31.</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96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4. 4. 8.</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4 -25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5. 6.17.</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5 -41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6. 4.20.</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6 -43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6. 9. 5.</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6 -93호</td> </tr> </table> <p><b>제1조(목적)</b>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및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등 기준 및 대상,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사업금액의 하한)</b>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과 같다.</p> <p><b>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예)</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li> <li>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li> </ol>	제정	2004. 3. 6.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 -11호	일부개정	2006. 4.2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15호	일부개정	2007. 9.10.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 -33호	전부개정	2008.12.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8호	일부개정	2009. 8.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0호	일부개정	2009. 9.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8호	일부개정	2011.12.3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9호	일부개정	2012. 4.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87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2호	타법개정	2013.12.3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6호	일부개정	2014. 4. 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25호	일부개정	2015. 6.17.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41호	일부개정	2016. 4.2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43호	일부개정	2016. 9. 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93호	<p>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p>4. 법 제20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 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p> <p><b>제4조(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b>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2와 같다.</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6-93호, 2016.9.5.&gt;</p> <p><b>제1조(시행일)</b>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재검토키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제정	2004. 3. 6.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 -11호																																																						
일부개정	2006. 4.2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15호																																																						
일부개정	2007. 9.10.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 -33호																																																						
전부개정	2008.12.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8호																																																						
일부개정	2009. 8.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0호																																																						
일부개정	2009. 9.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8호																																																						
일부개정	2011.12.3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9호																																																						
일부개정	2012. 4.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87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2호																																																						
타법개정	2013.12.3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6호																																																						
일부개정	2014. 4. 8.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25호																																																						
일부개정	2015. 6.17.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41호																																																						
일부개정	2016. 4.2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43호																																																						
일부개정	2016. 9. 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93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p>[별표 1]</p> <p>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p> <table border="1" data-bbox="142 394 950 863"> <thead> <tr> <th data-bbox="142 394 556 546">구 분</th> <th data-bbox="556 394 950 546">사업금액의 하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42 546 556 706">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td> <td data-bbox="556 546 950 706">80억원 이상</td> </tr> <tr> <td data-bbox="142 706 556 863">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td> <td data-bbox="556 706 950 863">40억원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p>[별표 2]</p> <p>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p> <table border="1" data-bbox="967 394 1775 863"> <thead> <tr> <th data-bbox="967 394 1180 546">공공기관명</th> <th data-bbox="1180 394 1775 546">해당 사업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67 546 1180 706">한전케이디엔(주)</td> <td data-bbox="1180 546 1775 7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관련 소프트웨어사업 (단,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총무·인사·노무·일반 행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디지털 변전소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li> <li>○ 전력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업</li> </ul> </td> </tr> <tr> <td data-bbox="967 706 1180 863">코레일네트웍스(주)</td> <td data-bbox="1180 706 1775 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카드 정산 소프트웨어사업</li> <li>○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사업</li> </ul> </td> </tr> </tbody> </table>	공공기관명	해당 사업범위	한전케이디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관련 소프트웨어사업 (단,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총무·인사·노무·일반 행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디지털 변전소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li> <li>○ 전력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업</li> </ul>	코레일네트웍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카드 정산 소프트웨어사업</li> <li>○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사업</li> </ul>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공공기관명	해당 사업범위												
한전케이디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관련 소프트웨어사업 (단,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총무·인사·노무·일반 행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디지털 변전소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li> <li>○ 전력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업</li> </ul>												
코레일네트웍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카드 정산 소프트웨어사업</li> <li>○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사업</li> </ul>												
<p>비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p>													



##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 17 대기업을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10%;">제정</td><td style="width: 15%;">2012.11.23.</td><td style="width: 25%;">지식경제부 고시</td><td style="width: 10%;">제2012-281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3. 1. 9.</td><td>지식경제부 고시</td><td>제2013 - 3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3. 3.14.</td><td>지식경제부 고시</td><td>제2013 -53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3. 6.26.</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3 -18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3. 7.30.</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3 -28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3. 9. 9.</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3-154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3. 10.4.</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3-166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3. 12.5.</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3-182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4. 1.21.</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4 - 7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4. 4. 4.</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4 -24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4. 5.20.</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4 -35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4. 6.25.</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4 -42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4. 8.29.</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4 -53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4.12.19.</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4 -99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5. 4. 2.</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5 -28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5. 5.22.</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5 -38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5. 9. 4.</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5 -63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6. 5.23.</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6 -55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6. 6.27.</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6 -71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6. 8. 5.</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6 -86호</td></tr> <tr><td>일부개정</td><td>2016. 9. 5.</td><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td>제2016 -92호</td></tr> </table> <p><b>제1조(목적)</b>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국방사업)</b>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기체계와 관련된 사업</li> <li>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사업</li> <li>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에 위한 사업</li> </ol>	제정	2012.11.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1호	일부개정	2013. 1. 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 - 3호	일부개정	2013. 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 -53호	일부개정	2013. 6.2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18호	일부개정	2013. 7.3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28호	일부개정	2013. 9. 9.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4호	일부개정	2013. 10.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66호	일부개정	2013. 12.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2호	일부개정	2014. 1.2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 7호	일부개정	2014. 4. 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24호	일부개정	2014. 5.2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35호	일부개정	2014. 6.2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42호	일부개정	2014. 8.29.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53호	일부개정	2014.12.19.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99호	일부개정	2015. 4. 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28호	일부개정	2015. 5.2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38호	일부개정	2015. 9. 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63호	일부개정	2016. 5.23.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55호	일부개정	2016. 6.27.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71호	일부개정	2016. 8. 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86호	일부개정	2016. 9. 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92호	<p><b>제3조(외교사업)</b>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li> <li>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li> <li>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li> <li>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li> </ol> <p><b>제4조(치안사업)</b>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li> <li>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li> <li>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li> <li>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li> </ol> <p><b>제5조(전력사업)</b>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li> <li>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li> <li>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li> </ol> <p><b>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b>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p> <p><b>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b>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li> </ol>
제정	2012.11.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1호																																																																																		
일부개정	2013. 1. 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 - 3호																																																																																		
일부개정	2013. 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 -53호																																																																																		
일부개정	2013. 6.2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18호																																																																																		
일부개정	2013. 7.3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28호																																																																																		
일부개정	2013. 9. 9.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4호																																																																																		
일부개정	2013. 10.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66호																																																																																		
일부개정	2013. 12.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2호																																																																																		
일부개정	2014. 1.2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 7호																																																																																		
일부개정	2014. 4. 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24호																																																																																		
일부개정	2014. 5.2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35호																																																																																		
일부개정	2014. 6.2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42호																																																																																		
일부개정	2014. 8.29.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53호																																																																																		
일부개정	2014.12.19.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 -99호																																																																																		
일부개정	2015. 4. 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28호																																																																																		
일부개정	2015. 5.2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38호																																																																																		
일부개정	2015. 9. 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63호																																																																																		
일부개정	2016. 5.23.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55호																																																																																		
일부개정	2016. 6.27.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71호																																																																																		
일부개정	2016. 8. 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86호																																																																																		
일부개정	2016. 9. 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92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p>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li> <li>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li> <li>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li> <li>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li> </ol> <p><b>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b>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서식의 인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 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li> <li>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li> </ol>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b>제8조의2(적용예외)</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b>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li> <li>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li> <li>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li> <li>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li> </ol> <p>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li> <li>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li> <li>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li> </ol> <p><b>제10조(관리·감독 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p>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p>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b>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12조(지원기관)</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p> <p><b>제13조(예산의 지원)</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6-86호, 2016.8.5.&gt;</p> <p><b>제1조(시행일)</b>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재검토기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p> <table border="1" data-bbox="975 268 1773 1253"> <thead> <tr> <th>해당분야</th> <th>주관기관</th> <th>사업명(고시일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국방</td> <td>국방부</td> <td>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2012.11.24.)</td> </tr> <tr> <td>국방부</td> <td>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3.3.14.)</td> </tr> <tr> <td>국방부</td> <td>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2013.7.30.)</td> </tr> <tr> <td>방위사업청</td> <td>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3개 작전사 추가소요 구축사업(2013.12.5.)</td> </tr> <tr> <td>국방부</td> <td>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2014.4.4.)</td> </tr> <tr> <td>국방부</td> <td>국방통계 고도화(2014.5.20.)</td> </tr> <tr> <td>국방부</td> <td>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2014.6.25.)</td> </tr> <tr> <td>방위사업청</td> <td>해군 전술 C4체계 성능개량 사업(2015.1.1.)</td> </tr> <tr> <td>방위사업청</td> <td>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개량 사업(2016.8.5.)</td> </tr> <tr> <td>방위사업청</td> <td>지상전술C4체계 2차 성능개량 2작전사체계(2016.8.5.)</td> </tr> <tr> <td>외교</td> <td>한국수력원자력</td> <td>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2013.10.4.)</td> </tr> <tr> <td rowspan="5">치안</td> <td>법무부</td> <td>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2014.1.21.)</td> </tr> <tr> <td>대법원</td> <td>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3.9.9.)</td> </tr> <tr> <td>대법원</td> <td>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3.9.9.)</td> </tr> <tr> <td>대법원</td> <td>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4)(2014.8.29.)</td> </tr> <tr> <td>대법원</td> <td>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4)(2014.8.29.)</td> </tr> </tbody> </table>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고시일자)	국방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2012.11.24.)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3.3.14.)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2013.7.30.)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3개 작전사 추가소요 구축사업(2013.12.5.)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2014.4.4.)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2014.5.20.)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2014.6.25.)	방위사업청	해군 전술 C4체계 성능개량 사업(2015.1.1.)	방위사업청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개량 사업(2016.8.5.)	방위사업청	지상전술C4체계 2차 성능개량 2작전사체계(2016.8.5.)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2013.10.4.)	치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2014.1.21.)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3.9.9.)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3.9.9.)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4)(2014.8.29.)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4)(2014.8.29.)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고시일자)																																					
국방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2012.11.24.)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3.3.14.)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2013.7.30.)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3개 작전사 추가소요 구축사업(2013.12.5.)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2014.4.4.)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2014.5.20.)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2014.6.25.)																																					
	방위사업청	해군 전술 C4체계 성능개량 사업(2015.1.1.)																																					
	방위사업청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개량 사업(2016.8.5.)																																					
	방위사업청	지상전술C4체계 2차 성능개량 2작전사체계(2016.8.5.)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2013.10.4.)																																					
치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2014.1.21.)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3.9.9.)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3.9.9.)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4)(2014.8.29.)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4)(2014.8.29.)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고시일자)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고시일자)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5)(2015.5.22.)		한국 가스공사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2012.11.24.)
	대법원	201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5.9.4.)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2013.1.9.) * 전력유관 사업
	국민안전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2015.9.4.)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2013.1.9.)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6)(2016.5.23.)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2013.6.26.)
	대법원	2017년 사법업무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6.9.5.)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2013.6.26.)
	대법원	2017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등기)사업(2016.9.5.)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2013.10.4.)
전력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2013.3.14.)	인천국제 공항공사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2014.1.21.)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2013.3.14.)	안전행정부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2014.4.4.)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2013.6.26.)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사업(2014.8.29.)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2013.6.26.)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2015.4.2.)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2013.12.5.)	국세청	2015 ~ 2016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2015.4.2.)	
	한국전력거래소	2015년 계통운영시스템(EM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2015.4.2.)	한국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건정의 사업(2015.5.22.)	
	한국전력거래소	2016~2018년도 전력IT 유지관리 위탁용역(2016.6.27)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업무시스템 혁신 사업(2016.8.5.)	
기타 국가안보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2012.11.24., 2013.6.26.)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016.9.26)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012.11.24.)	미래창조과학부	우편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운영 용역사업(2016.9.26)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 [별지 서식]

**대기업의 참여하한 예외적용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요청서**

※예외적용 필요성 관련 사업 설명자료

**사 업 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	------	------	-----

요청인	국가기관명	(주소: _____ )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성명/직위	전자우편주소	

요청 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유형 : 택일)	20 . . . . ~ 20 . . . .	<input type="checkbox"/> 단년도 계약 <input type="checkbox"/> 장기계속계약	
	정보화전략수립 수행여부	수행시기 : _____	입찰공고 예정일자	
	예외분야(택일)	<input type="checkbox"/> 국방 <input type="checkbox"/> 외교 <input type="checkbox"/> 치안 <input type="checkbox"/> 전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국가안보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SW개발비	백만원	유지관리비	백만원
	상용SW구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HW구입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개발규모(FP)		투입인력(M/M)	
	SW분리발주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시예정 <input type="checkbox"/> 실시계획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하한 적용 예외사업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요청기관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요청기관 제출서류
1. 예외적용 필요성관련 사업설명자료 1부
  2. 세부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안) 1부  
(다만, 제안요청서 제출시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별첨 제출)

**1.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등을 간략히 작성

**2. 주요사업내용**

\* 해당 사업의 목표 시스템, 사업체제도, 시스템 연계통합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적 추진근거 및 공동발주 등 연계성 기술

\* 특히, 연계기관 수 및 역할, 개발방식(패키지 도입 또는 전면/일부 개발 등), 프레임워크 구축여부 등 예외적용 필요성에 대한 소명사유와 근거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3. 예외적용 필요성**

**가. 국가안보 등 해당성**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 중에서 해당부문을 명시하고 예외적용의 필요 사유와 근거 등을 구체적·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하고 정량지표 활용

\* 인정요청서에 표기한 예외요청분야를 우선 기재하고, 중복 분야가 있는 경우 후순위별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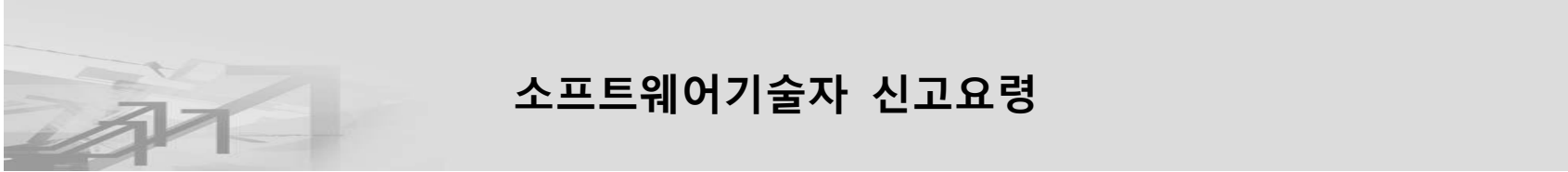
**나. 대기업 참여 불가피성**

\* 고시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각 호 중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각호는 중복가능)하고 각 호별로 주요사유와 근거를 구체적·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

\* 특히, 제7조는 해당 사업의 고도의 시스템통합능력, 사업관리능력, 위험관리대응능력, 소요 기술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예외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능한 정량지표, 비교 분석을 활용하여 작성

(10페이지 이내 작성)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 18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제 정</td> <td style="width: 15%;">2008.12.19.</td> <td style="width: 15%;">지식경제부 고시</td> <td style="width: 15%;">제2008-200호</td> </tr> <tr> <td>타법개정</td> <td>2009. 8.21.</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09-193호</td> </tr> <tr> <td>타법개정</td> <td>2012. 3.26.</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2 -67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2.11.23.</td> <td>지식경제부 고시</td> <td>제2012-276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3. 9. 6.</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3-153호</td> </tr> <tr> <td>일부개정</td> <td>2016. 4.20.</td> <td>미래창조과학부 고시</td> <td>제2016 -44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기술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자격 또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li> <li>2. "경력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5항 및 영 제17조의7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li> <li>3.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이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게 신고하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말한다.</li> <li>4. "수수료"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6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li> </ol> <p><b>제3조(운영세칙)</b> 이 요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경력관리기관</b></p> <p><b>제4조(경력관리기관의 지정)</b> 경력관리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한다.</p>	제 정	2008.12.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	타법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타법개정	2012. 3.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67호	일부개정	2012.11.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76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3호	일부개정	2016. 4.2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44호	<p><b>제5조(보고의무 등)</b> ①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경력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현황(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li> <li>2. 기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수시)</li> </ol> <p><b>제6조(경력관리심의위원회)</b> ①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력·경력·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li> <li>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li> <li>3.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li> <li>4. 기타 경력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li> </ol> <p>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b></p> <p><b>제7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b> ① 법 제2조제5호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란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p> <p>②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p> <p>③ 영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li> <li>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li>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li>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li> </ol>
제 정	2008.12.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																						
타법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타법개정	2012. 3.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67호																						
일부개정	2012.11.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76호																						
일부개정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3호																						
일부개정	2016. 4.2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44호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p><b>제8조(신고절차 등)</b>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규칙 제13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서(이하 "경력 등 신고서"라 한다)와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li> <li>2.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li> <li>3. 기타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li> </ol> <p>③ 경력 등 신고서, 규칙 제13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작성방법과 신고절차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④ 신고서 없이 구비서류만 제출하였거나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경력관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서류를 폐기한다.</p> <p>⑤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b>제9조(신고서류 등)</b> ① 경력 등 신고서의 구비서류 중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li> <li>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li> <li>3. 기타 근로계약서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② 경력 등 신고서의 구비서류 중 "기술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li> <li>2. 기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b></p> <p><b>제10조(경력증명서 발급신청 등)</b>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1조(증명서 발급 등)</b> ① 경력관리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경력관리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력에 대해서는 증명서에 사실확인 여부를 표기한다.</li> <li>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실을 경력관리기관 전산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li> <li>④ 경력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또는 청문 등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li> </ol> <p><b>제12조(정정신청 등)</b> ①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증명서의 인정된 경력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기, 착오 등 내용이 경미한 사안 또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직권정정으로 처리</li> <li>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 이외의 중요한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정정으로 처리</li> </ol> <p><b>제13조(수수료납부 등)</b> 수수료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내용별 수수료 납부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행정사항</b></p> <p><b>제14조(재검토키한)</b>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016-44호, 2016.4.20.&gt;</p> <p>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19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p>제 정 2013. 7.19.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163호                      일부개정 2014. 7. 8.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80호                      일부개정 2016. 2.26.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 -72호</p>	<p><b>1. 지정 기관</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지정번호</th> <th style="width: 30%;">기관명</th> <th style="width: 55%;">소재지</th> </tr> </thead> <tbody> <tr> <td>2015-01</td> <td>소프트엔지니어스쿨</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4층 017-1호</td> </tr> <tr> <td>2015-02</td> <td>(주)한국소프트웨어아이엔씨</td> <td>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2차 410호</td> </tr> <tr> <td>2015-03</td> <td>아이코어이앤씨</td> <td>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0 삼산빌딩 5층</td> </tr> <tr> <td>2014-01</td> <td>에스케이 플래닛(주)</td> <td>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삼평동)</td> </tr> <tr> <td>2014-02</td> <td>주식회사 솔루션링크</td> <td>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406(탑립동,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td> </tr> <tr> <td>2014-03</td> <td>주식회사 나이텍</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5 (도곡동, 한독빌딩 4층)</td> </tr> <tr> <td>2013-01</td> <td>(재)엔에이치엔 넥스트</td> <td>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td> </tr> <tr> <td>2013-02</td> <td>삼성에스디에스 (주)</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19</td> </tr> <tr> <td>2013-03</td> <td>MD스테크놀로지 (주)</td> <td>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td> </tr> <tr> <td>2013-04</td> <td>(주)에스티에이테스팅 컨설팅</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54</td> </tr> <tr> <td>2013-05</td> <td>(주)비트컴퓨터</td> <td>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7-33</td> </tr> <tr> <td>2013-06</td> <td>(주)다우기술</td> <td>경기도 용인수지구 죽전동 23-7 디지털스퀘어6층</td> </tr> <tr> <td>2013-07</td> <td>(주)한경닷컴</td> <td>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1 한경센터 10층</td> </tr> <tr> <td>2013-08</td> <td>(주)콤텍정보통신</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td> </tr> </tbody> </table>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2015-01	소프트엔지니어스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4층 017-1호	2015-02	(주)한국소프트웨어아이엔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2차 410호	2015-03	아이코어이앤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0 삼산빌딩 5층	2014-01	에스케이 플래닛(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삼평동)	2014-02	주식회사 솔루션링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406(탑립동,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14-03	주식회사 나이텍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5 (도곡동, 한독빌딩 4층)	2013-01	(재)엔에이치엔 넥스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2013-02	삼성에스디에스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2013-03	MD스테크놀로지 (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2013-04	(주)에스티에이테스팅 컨설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54	2013-05	(주)비트컴퓨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7-33	2013-06	(주)다우기술	경기도 용인수지구 죽전동 23-7 디지털스퀘어6층	2013-07	(주)한경닷컴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1 한경센터 10층	2013-08	(주)콤텍정보통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2015-01	소프트엔지니어스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4층 017-1호																																												
2015-02	(주)한국소프트웨어아이엔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2차 410호																																												
2015-03	아이코어이앤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0 삼산빌딩 5층																																												
2014-01	에스케이 플래닛(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삼평동)																																												
2014-02	주식회사 솔루션링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406(탑립동,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14-03	주식회사 나이텍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5 (도곡동, 한독빌딩 4층)																																												
2013-01	(재)엔에이치엔 넥스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2013-02	삼성에스디에스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2013-03	MD스테크놀로지 (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2013-04	(주)에스티에이테스팅 컨설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54																																												
2013-05	(주)비트컴퓨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7-33																																												
2013-06	(주)다우기술	경기도 용인수지구 죽전동 23-7 디지털스퀘어6층																																												
2013-07	(주)한경닷컴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1 한경센터 10층																																												
2013-08	(주)콤텍정보통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b>신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기관 선정 공고</b></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규 소프트웨어전문인력양성기관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2016년 2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p>																																														





(우:27872)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10 (두촌리99-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SW수발주제도 상담 : 043)931-5353 [swhelp@nipa.kr](mailto:swhelp@nipa.kr)